

2024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의안번호 : 제2821호

다. 제출일자 : 2025. 5. 26.

라. 회부일자 : 2025. 5. 29.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결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3. 결산개요

가. 일반회계 및 소방특별회계

1) 세입결산

【일반회계】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정리보류	미수납액	수납률(% (B/A))
일반회계			280	280			100.0

- 일반회계 세입은 소방특별회계로 처리된 특별교부세 세입금을 일반회계 지방교부세(특별교부세)로 재정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2억 8천 만원의 수납액이 계상된 것임.

【소방특별회계】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정리보류	미수납액	수납률(% (B/A))
소방특별회계	1,026,006	1,026,732	1,001,010	1,000,668	21	322	100.0

- 세입 예산현액은 1조 267억 32백 만원이었으나 실제 1조 10억 1천 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이 중 1조 6억 68백 만원을 수납하고, 2천 1백 만원을 정리보류하였으며, 3억 22백 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고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대비 100%임.

2) 세출결산

【일반회계】

세출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일반회계	977,726	-	-	-	-	-	977,726	949,407	-	-	-	-	28,319

- 2024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세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기준 총 9,777억 26백 만원이 편성되었으며, 9,494억 7백 만원을 지출하고 283억 19백 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소방특별회계】

세출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합계	2,003,732	725		1,632 (-1,632)	25 (-25)		2,004,458	1,926,609	14,265	13,886	379	149	63,434 (3.1%)
일반회계	977,726						977,726	949,407					28,319 (2.8%)
특별회계	1,026,006	725		1,632 (-1,632)	25 (-25)		1,026,732	977,202	14,265	13,886	379	149	35,115 (3.4%)

- 2024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세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9,777억 26백 만원과 소방특별회계 1조 267억 32백 만원을 포함하여 총계예산 규모로 총 2조 44억 58백 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이 중 96.1%인 1조 9,266억 9백 만원을 지출하고, 0.7%인 142억 65백 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1%인 634억 34백 만원이 발생되었음.

3) 예산 이용 · 전용 · 이체 · 변경 · 예비비

【일반회계】

- 이용, 전용, 이체, 변경, 예비비
 - 이용, 전용, 이체, 변경, 예비비 사용 없음.

【소방특별회계】

- 이용
 - 예산 이용 없음.

- 전용
 - 예산 전용은 2건에 2천 5백 만원으로 해피머니 상품권 거래가 중단됨에 따라 상품권 보상을 위한 것으로
 - 소방서장 표창 시상금 2천 4백 만원
 - 몸짱소방관 선발대회 포상금 1백 만원임.

- 이체
 - 예산 이체 없음.

- 변경
 - 예산 변경은 3건에 16억 32백 만원으로
 - SH공사의 주거안심종합센터와의 협업을 통한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추진 불가로 보급사업 방식 변경(위탁사업 → 직접사업)에 따른 10억 37백 만원
 - 성능위주평가단의 심의 건수 증가(29회→46회)에 따른 부족분 1천 만원
 - 공무원(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부족분 5억 85백 만원임.

○ 예비비

- 예비비 사용 없음.

4)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 다음년도 이월비는 142억 65백 만원으로 명시이월 138억 86백 만원, 사고이월 3억 79백 만원이며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 1조 267억 32백 만원 대비 1.39%임.

5)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351억 15백 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1조 267억 32백 만원 대비 3.4%에 해당하는 규모임.

집행잔액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	비고
2024	1,026,732	35,115	3.4%	

- 발생원인별 내역

- 지출 잔액 : 292억 44백 만원
- 낙찰차액 잔액 : 23억 40백 만원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13억 90백 만원
- 보조금정산 잔액 : 2억 38백 만원
- 예비비 : 18억 13백 만원
- 예산절감 : 90백 만원

4. 검토 의견

가. 일반회계

1) 세입결산

세입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정리보류	미수납액	수납률(% (B/A))
일반회계			280	280			100.0

- 일반회계 세입은 해당이 없으나 소방특별회계로 처리된 특별교부세 세입금을 일반회계 지방교부세(특별교부세)로 재정정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2억 8천 만원의 수납액이 계상된 것임.
- 해당 수납액은 통상적인 세입 실적이 아닌 회계 정리상의 입·출금 처리에 해당하며 자세한 환급 경위는 소방특별회계 세입항목(p.30~p.31)에서 별도 검토함.

2) 세출결산

세출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24	977,726	-	-	-	-	-	977,726	949,407	-	-	-	-	28,319
2023	945,505	-	-	-	-	-	945,505	945,505	-	-	-	-	0
2022	893,165	-	-	-	-	-	893,165	893,165	-	-	-	-	0

가) 집행잔액(불용액)(결산서 p.15~21)

○ 2024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세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기준 총 9,777억 26백 만원이 편성되었으며, 9,494억 7백 만원 지출되었고 283억 19백 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이는 일반적인 세출 미집행에 따른 불용이 아니라,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 충당을 위한 기타회계전입금 중 지역자원시설세의 징수액 감소와 소방안전교부세 감액교부에 따른 실제 세입 부족으로 인해 관련 세출 예산이 감액 조정되면서 발생한 구조적인 잔액임.

나. 소방특별회계

1) 세입결산

세입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2024	1,026,006	1,026,732	1,001,010	1,000,668	21	322	100.0
2023	977,242	983,108	986,444	986,129	33	282	100.0
2022	945,971	950,036	950,046	949,831	13	202	100.0

가) 개요

○ 세입 예산현액은 1조 267억 32백 만원이었으나 실제 1조 10억 1천 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이 중 1조 6억 68백 만원을 수납하고, 2천 1백 만원을 정리보류하였으며, 3억 22백 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고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대비 100%임.

나) 세수추계 (결산서 p.37~40)

- 소방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의 경우 세입예산현액 1조 267억 32백 만원 대비 257억 22백 만원이 감소한 1조 10억 1천 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일부 세입 중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간 세수 추계의 차이가 3천 만원 이상 혹은 30% 이상 발생한 항목들은 다음 [표]와 같음.

[표]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과다한 항목

(단위 : 천원)

편성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차액(c) (b-a)	증감률 (c/a*100)	비고
경상적 제외수입						
공 유 재 산 료 임 대 료	217,095	83,150	83,150	△133,945	△61.7%	은평소방서 녹번119안전센터 2024년 하반기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사업 축소로 임대면적 감소 및 계약종료에 따라 임대료 수입이 감소
증 지 수 입	40,536	54,464	54,464	13,928	34.4%	24년 증지수입 추계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여 최근 5년간 연평균 감소율(11%)을 반영하여 추계하였으나 2023년 세입징수액(51,643천원) 수준으로 징수하여 예산대비 세입액이 증가
공 공 예 금 이 자 수 수 입	113,823	408,633	408,633	294,810	259.0	세출계좌의 최근 3년 평균잔고와 이자율(공공예금 이자율 2.52%)을 반영하여 세입예산을 추계하였으나, 서울시 재무과에서 소방특별회계 세출계좌 잔고(3백억)를 활용 정기예금 운용에 따른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증가
기 타 이 자 수 입	56,756	23,444	23,444	△33,312	△58.7	법인카드통장 등 보통예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최근 5년 평균(최고, 최저 제외)액에 시금고 협약에 의한 이자율 증가분(1.52%→2.52%)을 반영하여 추계하였으나, 추계 대비 평균잔고의 감소로 인하여 이자수입 감소
임시적 제외수입						
불 용 품 매 각 대	210,604	593,080	593,080	382,476	181.6	추계대비 불용품 및 불용차량이 증가하여 매각 수입 증가하였으며, 특히

편성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차액(c) (b-a)	증감률 (c/a*100)	비고
						2024년에는 이륜차(18대)의 매각수입(67,233천원)이 증가
그 외 수 입	563,189	186,862	186,862	△376,327	△66.8	각종 잡수입으로 예측이 곤란하여, 최근 5년간 세입액에서 일시증가분을 제외한 평균 수납액을 추계하였으나, 과오납 및 각종 정산 환급금이 감소
지 난 연 도 수입	15,197	295,795	64,677	280,598	1,846.4	과년도 체납에 대한 수입으로 납부독촉 및 적극적인 압류에도 납세태만, 무재산 등 체납으로 지난연도수입 징수결정액 증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과 징 금	55,112	199,301	188,501	144,189	261.6	최근 5년간(22~18년) 징수액에서 최고·최저를 제외한 평균 징수액으로 추계하였으나, 추계 대비 부과액 증가
이 행 강 제 금	10,000	25,000	5,000	15,000	150.0	22년~23년 평균징수액으로 추계하였으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간이SP 미설치) 업소의 증가로 부과 금액 증가
기 타 과 태 료	750,137	984,112	903,869	233,975	31.2	최근 수납액의 급격한 증가로 22년도 과태료 수납액에 연평균 증가율(14.4%)을 반영하여 추계하였으나 소방서의 119기동단속팀을 운영하여 과태료 부과액 증가
보전수입 등						
민 간 용 자 회 회 수 수입	2,295,000	3,460,000	3,460,000	1,165,000	50.8	최근 5년간 1인당 평균 상환액과 평균 상환인원을 반영하여 추계하였으나 중도상환자의 증가로 인하여 상환액의 증가
기 타 회 계 전 입 금	977,726,116	949,407,090	949,407,090	△28,319,026	△2.9%	2024년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및 소방안전교부세의 징수전망액 하락으로 전입금이 감소

-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는 예산액 2억 17백 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이 8천 3백 만원으로 1억 34백 만원(61.7%)이 감소하였음.

[표] 공유재산 임대료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장소 (면적)	임대 방식	납부방법	2024년			임대기간	
				예산액	수납액	차액		
합 계				217,095	83,150	△133,945		
소 방 재난본부	(주)신한은행 본부출장소	본부1층 (98.55㎡)	유상	연간임대료 일시납	29,518	29,413	△105	2025.1.1.~ 2025.12.31.
녹번119 안전센터 (은평소방서)	녹번 만화도서관 (은평구청)	녹번센터 대지(58㎡)	유상	연간임대료 일시납	6,357	6,432	75	2024.12.20.~ 2025.12.19.
	스토어 36.5 (은평구청)	녹번센터 1층 (144.05㎡)	유상	연간임대료 일시납	33,228	33,211	△17	2025.1.1.~ 2025.12.31.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은평구청)	녹번센터3층 (216.65㎡)	유상	반기임대료 일시납	147,992	14,094	△133,898	(변경전)2024. 7.1.~2025.6.3 0. → (변경후) 2024.7.1.~ 2024.10.31.
	청년취업사관학 교 은평캠퍼스 (서울특별시)	녹번센터 3층 일부, 4층 (771.25㎡)	무상	-	-	-	-	2025.7.1.~ 2029.12.31.
	서울소방공무원 노동조합 사무공간(50㎡)	녹번센터3층 (50㎡)	무상	-	-	-	-	2025.1.1.~ 2029.12.31.

- 이는 은평소방서가 은평구청과 사회적경제허브센터에 대한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은평구청 요청에 따라 사용면적을 축소(당초 930.14㎡ → 변경 216.65㎡)¹⁾하여 계약하였고 이후 임대 도중 임차종료일도 24.10.31일로 조정됨에 따른 것임.

- 한편, 사회적경제허브센터 퇴거 이후 해당 공간은 서울특별시 청년 취업사관학교 은평캠퍼스(771.25㎡)와 서울소방공무원 노동조합 사무 공간(50㎡)으로 무상 제공²⁾되어 공실 없이 활용되는 점은 긍정적이나,

1) 은평소방서 공유재산 대부계약 자료 제출(은평구청 사회적경제과-8807, 2024.5.30.)
"은평구사회적경제허브센터"의 24년도 하반기 대부계약 제출 시 임대면적 감소 요청

□ 대부현황

소재지	사용면적	사용목적	연장 신청 기간
은평로 245, 3층 (녹번119안전센터)	216.65㎡	은평구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2024. 7. 1. ~ 2024. 12. 31.(6개월)

□ 변경사항 : 사용면적(930.14㎡→216.65㎡) 변경

2) 청년취업사관학교 은평캠퍼스 및 서울소방공무원 노동조합 무상제공 근거

□ 청년취업사관학교 은평캠퍼스 : 서울시가 직접 추진하는 「1자치구 1청년취업사관학교」 사업으로,

- 기존 유상임대에 따른 세입이 중단되는 만큼 은평소방서 및 소방재난본부 측면에서 보다 효과적인 사용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증지수입은 예산액 4천 1백 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5천 4백 만원으로 1천 4백 만원(34.4%)이 증가하였는데,

- 이는 소방시설공사법 등에 의한 인허가 등 수수료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최근 5년간 징수액의 연평균 감소율 (11%)을 반영하여 추계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 주변 환경 변화와 사업 변동성 등을 보다 주의 깊게 관찰하여 세입추계 시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표] 최근 5년간('24 ~ '20) 증지수입 세입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별	2024	2023	2022	2021	2020
합계	54,464	51,643	51,176	54,286	61,539
방염성능시험 의뢰	35,270	35,000	34,880	35,140	42,980
위험물 취급 승인등	8,979	11,881	10,441	12,650	10,387
소방시설업등록 등	9,170	4,627	5,660	6,300	7,600
기타(정보공개청구등)	1,045	135	195	196	572

○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예산액 1억 14백 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4억 9백 만원으로 2억 95백 만원(259.0%)이 대폭 증가하였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공용 사용에 해당되어 무상사용 대상임.

□ 서울소방공무원 노동조합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및 서울시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제20조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으로, 공용 사용 조건하에 무상 대상임.

- 이는 지출계좌의 최근 3년 평균잔고와 이자율(공공예금 이자율 2.52%)을 반영하여 추계하였으나 지출계좌 이자는 감소한 반면 서울시 재무과에서 소방특별회계 세출계좌 잔고(3백억 원)를 활용한 정기예금 이자가 추가 발생한 것에 기인함.

[표] 최근 5년간('24 ~ '20) 공공예금 이자수입 세입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연도별				
		2024	2023	2022	2021	2020
합계		408,633	768,279	836,483	66,932	70,378
	지출계좌 이자 (금리 2.52%)	50,425	351,517	208,008	66,932	70,378
	정기예금 이자 (금리 4.15%)	358,208	416,762	628,475	0	0

- 지출계좌 이자수입의 경우 소방특별회계 세출 모계좌의 평균 잔고 및 적용 이자율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정확한 세수 추계가 어려우나 과거 실적과 경향 분석을 통해 근사치에 가까운 세수 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함.

[표] 최근 3년간 세출계좌 이자수입 발생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이자산정일	2024			2023			2022		
	발생 계좌 연도	평균잔고/ 예치금액	이자금액	발생 계좌 연도	평균잔고/ 예치금액	이자금액	발생 계좌 연도	평균잔고/ 예치금액	이자금액
전년도. 07.01~12.31.	2023	1,384,953	35,139	2022	19,538,312	298,470	2021	10,124,939	156,553
당해연도. 01.01~06.30.	2023	140,722	3,556	2022	974,341	24,550	2021	5,102,570	38,461
당해연도. 01.01~06.30.	2024	467,822	11,730	2023	1,136,359	28,497	2022	863,851	12,994
	합 계		50,425	합 계		351,517	합 계		208,008

- 한편, 정기예금 이자는 서울시 재무과가 소방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휴자금을 「지방회계법」 제39조(세계현금의 전용)에 따라 연도말 일반회계로 돌려주고 남은 잔액을 정기예금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이자분인데,
-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에서 단순 일회성 수입이 아닌 실질적 세입 항목으로 기능하고 있는 바 향후에는 서울시 전체 재정 흐름과 세수 전망을 보다 정밀하게 고려한 예산 운영이 필요함.

[표] 최근 3년간 정기예금 가입 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치금액	실지급이자	이자발생기간	이 율	상품구분
2024	30,000,000	351,401	2023.12.1. ~ 2024.4.12.	4.15%	정기예금
2024	6,807	6,807	2023.12.16. ~ 2024.2.16.	4.1%	자유예금
소계	30,006,807	358,208			
2023	100,000,000	273,161	2023.12.1. ~ 2023.12.31.	4.15%	정기예금
2023	5,143,601	143,601	2023.11.18. ~ 2023.12.15.	4.12%	자유예금
소 계	105,143,601	416,762			
2022	100,000,000	628,475	2022.10.18. ~ 2022.12.21.	3.87%	정기예금
소 계	100,000,000	628,475			

- 기타이자수입은 법인신용카드 결제통장 등에서 발생한 이자로 예산 추계 시 최근 5년(최고, 최저 제외) 평균액에서 '23년도 신한은행과의 시금고 협약에 의한 적용 금리³⁾(2.52%)를 반영한 5천 7백 만원 편성하였으나 징수결정액은 2천 3백 만원으로 예산 대비 3천 3백 만원(58.7%)이 감소하였음.([표] 참조)

[표] 최근 5년간('24 ~ '20) 기타이자수입 세입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수납액	23,444	36,325	29,000	31,009	40,472

- 이는 예치금 규모나 기간, 이자 발생 기준일 등 실질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이자수입 추계 시 금리뿐 아니라 실예치액 등 실질 수익 기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보다 신중한 예산추계가 필요해 보임.

- 다음으로, 임시적세외수입 중 불용품매각대금은 소방차량, 기타 물품 등의 노후화에 따라 그 용도를 폐기한 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예산액 2억 11백 만원 대비 3억 82백 만원(181.6%) 증가한 5억 93백 만원이 징수결정 되었음.

- 주요 증가 사유는 이륜차(18대), 특수구급차(29대) 등의 추가 매각으로 인해 2024년도 매각 차량 예상 대수 34대(1억 95백 만원) 대비 실제 매각 차량이 96대(5억 52백 만원)로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한 것임.([표] 참조)

3) 2023년 이후 공공예금 적용 금리 : 2.52% (22년말까지 1.52%에서 인상)

[표] 2024년 불용차량매각대금 세입 현황

(단위 : 대, 천원)

구분		2024년 예산추계			실제 매각 세입	
내용연수	차종	매각대수	평균매각단가	징수전망	매각대수	세입금액
계		34	65,500	195,000	96	552,102
12년	고가차	3	15,000	45,000	1	12,660
	굴절차	1	12,000	12,000	9	71,131
	조명배연차	3	5,000	15,000	3	33,170
10년	펌프차	1	7,000	7,000	7	47,394
	물탱크차	1	7,000	7,000	8	60,838
	화학차	3	9,000	27,000	3	20,870
8년	지휘버스	1	5,000	5,000		
	구조버스	5	3,000	15,000	2	9,680
	순찰차	1	3,000	3,000	2	15,363
	행정차	1	3,000	3,000	13	40,825
	이륜차	0	0	0	18	67,233
	이동체험차량	0	0	0	1	8,330
5년	구급차	14	4,000	56,000	29	164,608
7년	수상오토바이					

- 소방재난본부는 예산 추계 시 차년도 불용대상 차량에 대해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으나, 정비이력, 사고이력, 운행거리 등 다양한 변수를 반영하지 못해 실제 매각대수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됨.
- 향후에는 불용 가능 차량에 대한 예측 체계를 내구연수 외 운행 지표 기반으로 정교화하고, 예산편성 시 이력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 보임.
- 다음으로, 그외수입은 일반 세입과목에 속하지 않는 기타잡수입으로 예산액 5억 63백 만원 대비 3억 76백 만원(66.8%) 감소한 1억 87백 만원이 징수결정 되었음.([표] 참조)

[표] 최근 5년간 그외수입 징수현황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별	2020	2021	2022	2023	2024
예산액(a)	266,207	299,484	527,682	415,853	563,189
징수결정액(b)	498,580	778,741	917,952	1,447,042	186,861
차액(c=b-a)	232,373	479,257	390,270	1,031,189	△376,327
증감률(c/a*100)	87.3%	160.0%	74.0%	248.0%	△66.8%

- 주요 감소 원인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축소되었던 소방재난본부 자체 감사의 재개와 23년에는 서울시로부터 종합감사도 수감하면서 세출 집행에 대한 내부 인식과 주의가 크게 제고된 것으로 직원들의 주의 노력 향상으로 과오납반환금이 감소했다는 측면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사료됨.([표] 참조)

[표] 2019년~2024년 그외수입 세부 내역

(단위 : 천원)

과 세 내 용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과오납 및 정산 환급금 (자체점검 과지급 수당 등 환수액)	77,151	195,730	230,203	95,437	162,298	167,127	
각종 감사결과 환수금 (급여, 계약금액 오류산출 등)	28,804	29,425	12,384	60,696	26,129	44,550	
과년도 일반경비 집행잔액 및 계좌정리 세입	6,457	21,000	4,473	93,693	3,326	15,628	
소방학교 등 식당 외주업체 사용 공공요금	4,911	15,154	13,154	13,576	14,318	11,651	
기타	공공조달용 유류구매카드 등 포인트	633	3,412	5,172	466	15,807	150
	그 외 불분명 잡수입 등 보험료 환급금, 전화해지 환급금 등	63,857	160,767	119,023	99,776	9,110	36,756

○ **지난연도수입**은 전년도 누적된 체납액이 이월된 수입으로 예산액 1천 5백 만원 대비 2억 81백 만원(1,846.4%)이 증가한 2억 96백 만원이 징수결정 되었는데,

- 이는 예산편성이 완료된 다음연도 1월에 과태료, 체납액 등의 징수결정액이 확정됨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세입예산액을 추계함에 있어 가급적 징수 가능한 체납액 위주로 산정하되 체납액 징수에 대한 보다 강력한 의지를 담아 적극적으로 예산액을 편성할 필요가 있겠음.

- 한편, 최근 체납액에 대한 이월사유별 미수납내역을 살펴보면, 납세태만이 67.4%(72건, 1억 42백 만원)로 가장 높게 차지하고 있으며, 무재산 10.0%(11건, 2천 1백 만원), 폐업 또는 부도 9.1%(7건, 1천 9백 만원), 행방불명 7.7%(8건, 1천 6백 만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표]참조)

[표] **지난연도수입 부과년도별 미수납내역**

(단위 : 천원)

미수납사유	합계		부 과 년 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이전	
합 계	105건	210,558	21건	104,137	20건	31,420	12건	12,873	8건	13,387	26건	48,741
무재산	11건	21,154	1	1,175	4	3,390	1	1,057	2	2,687	3	12,845
행방불명	8건	16,245	3	8,549			3	4,421			2	3,275
납세태만	72건	142,020	27	73,729	14	25,681	7	6,628	5	8,802	19	27,180
폐업 또는 부도	7건	19,104	5	15,245	1	1,961			1	1,898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유예	0건	0										
궤기 또는 입원	0건	0										
소송계류	1건	2,324	1	2,324								
자금압박	3건	8,169	1	2,492			1	767			1	4,910
기타	3건	1,542	1	623	1	388					1	531

- 이처럼 고질적 체납이 누적되면서 누계체납액을 증가시켜 결국에는 정리보류액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좀 더 적극적인 수납을 제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다음으로,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중 과징금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소방 관련 법규에 따른 행정사항을 위반⁴⁾시 부과되는 것으로, 예산액 5천 5백 만원 대비 1억 44백 만원(261.6%) 증가한 1억 99백 만원이 징수결정 되었음.([표]참조)

[표] 최근 5년간('24 ~ '20) 과징금 세입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별	평균	2024	2023	2022	2021	2020
과징금 예산액	37,800	42,884	42,884	40,078	33,977	29,175
징수결정액	103,962	199,301	117,420	69,300	53,820	79,970
부과건수	14건	23건	4건	14건	12건	17건

- 이는 세입예산 추계 당시 최근 5년간('22~'18)을 기준으로 각 연도별 징수합계액에서 최고·최저 금액을 제외한 평균 징수액으로 편성하였으나, 과징금 산정의 경우 업체의 영업정지 기간(일)에 따른 연간매출액의 각 구간별 범위 내 1일 과징금 금액⁵⁾을

4) ※ 과징금 부과 예시: 하도급 제한 위반, 착공신고 위반, 소방시설 설계 시 화재안전기준 위반, 소방기술자 공사 현장 미배치 등

5)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0조제1호 관련)
 1. 일반기준(생략)
 2. 개별기준

급하여 얻은 금액으로 부과함에 따라 변동 폭이 크게 발생해 예산편성액 대비 증가한 것임.

- 이행강제금⁶⁾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비상구 훼손 또는 내부구조 임의 변경 등)으로 원상복구 조치 명령과 함께 부과하는 간접적 강제수단으로, 예산액 1천 만원 대비 1천 5백 만원(150%) 증가한 2천 5백 만원이 징수결정 되었음.

- 한편, 이행강제금 부과건수가 2022년 2건, 2023년 3건, 2024년 3건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세심한 사전 점검과 이행지도 강화가 요구됨.([표]참조)

등급	연간 매출액	1일 과징금 금액(단위: 원)
1	1억원 이하	10,000
2	1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20,500
3	2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34,000
4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55,000
5	5억원 초과 ~ 7억원 이하	80,000
6	7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0,000
7	10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120,000
8	13억원 초과 ~ 16억원 이하	140,000
9	16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160,000
10	20억원 초과 ~ 25억원 이하	180,000
11	25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200,000
12	3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220,000
13	4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240,000
14	50억원 초과 ~ 70억원 이하	260,000
15	70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	280,000
16	100억원 초과 ~ 150억원 이하	370,000
17	150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515,000
18	200억원 초과 ~ 300억원 이하	736,000
19	300억원 초과 ~ 500억원 이하	1,030,000
20	500억원 초과 ~ 1,000억원 이하	1,058,000
21	1,000억원 초과 ~ 5,000억원 이하	1,068,000
22	5,000억원 초과	1,100,000

6) ※ 이행강제금 : 수인의무의 불이행시에 일정액수의 금전이 부과될 것임을 미리 통지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주어 행정상 의무이행의 확보를 도모하는 간접적 강제수단

예)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훼손 및 내부구조 임의 변경 등으로 인한 위법 사항에 원상복구 조치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이행강제금)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0조의2제3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치 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표] 최근 5년간('24 ~ '20) 이행강제금 세입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별	평균	2024	2023	2022	2021	2020
이행강제금 예산액	12,365	10,000	12,170	11,416	17,625	10,616
징수결정액	16,200	25,000	30,000	16,000	0	10,000
부과건수	2건	3건	3건	2건	0건	1건

- 기타 과태료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가스사업법」 등 소방 관련 법령의 위반 시 부과하는 것으로, 예산액 7억 5천 만원 대비 2억 34백 만원(31.2%) 증가한 9억 84백 만원이 징수결정 되었음.([표]참조)

[표] 최근 5년간('24 ~ '20) 과태료 세입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별	평균	2024	2023	2022	2021	2020
과태료 예산액	518,170	750,137	471,613	460,156	459,235	449,710
징수결정액	716,141	984,112	903,035	686,421	550,330	456,805
수 납 액	667,202	903,869	830,512	655,714	508,255	437,658
부과건수	1,134건	1,194건	1,325건	1,193건	1,135건	822건

- 이는 예산추계 대비 부과 건수 및 금액의 증가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최근 5년간('24~'20) 과태료 부과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소방특별관리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위법사항 적발 시 관용 없는 처벌이 요구되는 한편 대시민 준법 홍보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다음으로, 보전수입 중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은 무주택 소방공무원의 전세융자금에 대한 중도상환액으로 예산액 22억 95백 만원 대비 11억 65백 만원이(50.8%) 증가한 34억 6천 만원 징수결정 되었는데,
 - 이는 당초 예상했던 상환 금액의 차이에 따라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예산편성에 앞서 시중금리의 변동과 상환계획에 대한 사전 조사를 보다 면밀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임.([표]참조)

[표] 최근 3년간('24 ~ '22)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세입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예산액	수납 금액	상환 인원	예산액 대비 수납률
2024		2,295,000	3,460,000	46명	150.8%
2023		2,446,000	3,539,000	49명	144.7%
2022		3,420,000	1,805,000	54명	52.8%

- 내부거래는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되는 소방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재원으로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소방안전교부세(일반 수요와 인건비)와 소방특별회계를 통한 인력운영비 지출을 처리하기 위한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예산액 9,777억 26백 만원 대비 283억 19백 만원(2.9%) 감소한 9,494억 7백 만원 징수 결정 되었음.([표]참조)

[표] '24년도 내부거래 내역

(단위 : 천원)

전입금 구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차액 (b-a)	비고
계	977,726,116	949,407,090	-28,319,026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333,795,000	309,392,000	-24,403,000	실제징수결정액은 289,392백만원이나 시에서 결손방지를 위해 200억을 전입하여 최종 징수결정액은 309,392백만원임.
소방안전교부세 (일반수요, 인건비)	30,568,302	26,652,276	-3,916,026	특수수요는 지방교부세로 편성됨.
일반회계전입금	613,362,814	613,362,814	0	
예탁금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0	0	0	

-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에서 244억 3백 만원, 소방안전교부세(일반수요, 인건비)에서 39억 16백 만원이 각각 결손됨에 따른 것임.

- 먼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교부세법」 제142조에 따라 소방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소방시설로 인해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산출되는 세입 항목⁷⁾임.

7) 「지방세법」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위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선박(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략)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 그러나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지속되면서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 시 노후건축물의 잔존가치율이 낮아지고 용도 및 구조 지수 체계가 개편되어 과거보다 낮은 과세표준 구간이 적용⁸⁾되었고 이로 인해 추정 대비 세입이 부족하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됨.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 2. 자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 ④ 제3항의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
- 8)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 산정 기준」 2023년 및 2024년 고시 주요 변동 내용

2023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2293호, 2023.1.1. 시행)으로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시 적용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의 정의를 재규정하고, 건축물의 적정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용도지수 체계 개편, 노후건축물의 실질가치 반영을 위한 최종연도의 잔존가치율 하향
2024년	건축물 경과연수별 잔가율 조정*, 분양형 호텔의 1·2층 가산 적용 제외, 초고층 건축물 층별 가산율 차등 현실화 등 가감산율 지수 개선 * 건축물 최종연도 잔가율을 15%에서 10%로 조정

구분	적용 연도	최종연도 잔가율	상각률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 통나무조	2023년 이전	20%	0.016	1 - (0.016 × 경과연수)
	2023년	15%	0.017	1 - (0.017 × 경과연수)
	2024년	10%	0.018	1 - (0.018 × 경과연수)
철근콘크리트조, 라멘조, 석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조, 목구조	2023년 이전	20%	0.020	1 - (0.020 × 경과연수)
	2023년	15%	0.021	1 - (0.021 × 경과연수)
	2024년	10%	0.0225	1 - (0.0225 × 경과연수)

※ 최근 2년간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과세표준 구간별 세액추이 (출처 : 서울시 2023년, 2024년 지방세 연감)
(단위 : 천원)

과세표준	세율	2023		2024		증감액	
		과표	세액	과표	세액	과표	세액
600만원이하	10,000분의4	294,894,028	290,063	310,810,285	322,117	15,916,258	23,054
600만원초과1,300만원이하	2,400원+600만원초과금액의10,000분의5	6,279,765,888	4,018,315	6,694,131,791	4,183,219	414,365,908	164,904
1,300만원초과2,600만원이하	5,900원+1,300만원초과금액의10,000분의6	25,950,563,293	16,810,002	25,653,224,673	16,692,285	-297,338,620	-117,717
2,600만원초과3,900만원이하	13,700원+2,600만원초과금액의10,000분의8	26,668,943,315	21,316,301	24,401,867,677	20,060,786	-2,267,075,638	-1,255,515
3,900만원초과6,400만원이하	24,100원+3,900만원초과금액의10,000분의10	34,068,256,354	33,542,583	30,646,276,201	31,285,901	-3,421,980,153	-2,256,682
6,400만원초과	49,100원+6,400만원초과금액의10,000분의12	109,132,670,350	251,328,084	96,377,532,796	224,240,549	-12,755,107,554	-27,087,535

- 참고로 2023회계연도에도 이와 동일한 이유로 342억 8백 만원의 결손이 발생한 바 있음.

[표] 최근 5년간 지역자원시설세 편성 및 세입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편성액(A)	291,155	333,795	321,043	312,487	306,899	300,580
소방분 세입액(B)	-	289,513	286,835	317,369	307,744	304,065
세입액 대비 편성액 현황(B-A)	-	△44,282	△34,208	4,882	845	3,485
사업비(70%)	-	△30,997	△23,946	3,417	592	2,440

- 다음으로,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 범위 내에서 소방인력 운용(25%), 소방사업 분야(15%), 안전사업 분야(5%)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⁹⁾으로 시에서는 이를 교부받아 해당 비율에 따라 소방에 배분하고 있는데

9)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인력 운용, 소방시설(소방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 목적: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목적: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인력,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현황,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투자 소요,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금액 중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방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 참고 : 서울시로 배정된 예산의 75%는 소방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25%는 안전 관련 사업에 사용됨.

[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재원 개요

구분	비율	내용
소방안전교부세	45%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은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과 결산에 따른 교부세의 차액을 더한 것을 말함.
소방인력 인건비	25%	「지방교부세법」제9조의4제1항제1호 1.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시설(소방 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 목적 :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중 같은 조 제 2항의 후단에서는 제1항제1호의 금액 중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도록 함
소방분야 사업비	15%	「지방교부세법」제9조의4제1항제1호에서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기준의 소방인력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40%-25% = 15%)
안전분야 사업비	5%	「지방교부세법」제9조의4제1항제2호 2.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목적 :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 이번 소방안전교부세 감액은 정부의 담배 개별소비세 재추계에 따른 전국 교부총액 조정 결과¹⁰⁾로, 서울시 역시 당초 계획보다 56억 49백만 원이 감액됨에 따라 소방특별회계 세입 중 인건비와 일반수요분에서 총 39억 16백 만원이 감액 조정됨.

10) 2024년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변경 안내(행정안전부 안전사업조정과-2804, 2024.11.1.)
 사유 : '24 담배분 개별소비세 재추계 결과에 따라 '24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변경내역 통보

(단위:천원)

구분	총계			인건비		사업비	
	당초 교부액	변경 교부액	감액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서울	43,766,496	38,117,876	Δ5,648,620	11,073,720	9,655,474	32,692,776	28,462,402

시·도	총교부액 (A+B)	인건비 (A)	사업비 (B=C+D)	일반수요(C)	특수수요 지원 금액(D)				
					합계	소방헬기	소방정	보행환경	안전체험관
서울	38,117,876	9,655,474	28,462,402	22,662,402	5,800,000	4,300,000	200,000		1,300,000

- ※ 일반수요 226억 62백 만원 중 75%인 169억 97백 만원은 소방특별회계, 25%인 56억 65백 만원은 안전관리로 교부됨
- ※ 소방안전교부세 특수수요(58억원)은 지방교부세로 세입하고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와 일반수요는 내부거래 중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세입편성

-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특별회계의 핵심 세입원인 만큼 세수 부족은 결국 소방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직결되므로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재정 불안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정적인 세입 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정리보류 (결산서 p.37~40 p.149)

- 소방특별회계 정리보류는 7건(2천 1백 만원)으로, 이 중 6건은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정리보류 등) 제2항11)에 따라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5년 경과)가 완성되어 정리보류한 것이고, 1건은 동법 시행령 제94조(정리보류)12)에 따라 기타(무재산)의 이유로 정리보류 처리한 것([표]참조)이기는 하나,

[표] '24년 정리보류액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소방서	채납 금액	최초 부과월	결손사유	정리보류 사유
	합계	20,559			
1	구로	3,009	2016-01	기타	사업장 폐쇄로 대표자 및 사업자 재산조회(차량,부동산) 결과 무재산으로 5년 경과하여 시효소멸
2	동대문	3,500	2019-04	시효소멸	사업장 폐쇄로 대표자 및 사업자 재산조회(차량,부동산) 결과 무재산으로 5년 경과하여 시효소멸
3	동대문	175	2018-09	시효소멸	사업장 폐쇄로 대표자 및 사업자 재산조회(차량,부동산) 결과 무재산으로 5년 경과하여 시효소멸
4	동대문	1,750	2019-02	시효소멸	사업장 폐쇄 및 본인 사망으로 채납액 징수 불가하여 정리보류 처리함
5	은평	6,000	2019-08	시효소멸	소유재산(부동산,차량) 명실 및 차량으로 압류 발령고, 질병으로 무입고 고관취등 생활고로 징수불가
6	동대문	5,250	2019-02	시효소멸	사업장 폐쇄 및 소유재산(차량) 차량으로 압류발령하여 사업자 소재거주지 불명으로 정리보류 차함
7	종로	875	2019-03	시효소멸	채납자 자택 방문 재산조회(차량,부동산) 등 진행하였으나 무재산 및 행방불명으로 5년 경과하여 시효소멸

11)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정리보류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시효 완성정리를 하여야 한다

12)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정리보류) ①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리보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채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채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 최근 3년간 정리보류액 현황을 보면 '24년 정리보류액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정리보류 전 재산조회 및 행방조사를 철저히 수행하여 부적절한 처분을 방지하고 체납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표]참조)

[표] 최근3년간 ('24~22년) 정리보류액 현황

(단위 : 천원 / 건수)

구분	연도별	평균금액		2024년도		2023년도		2022년도	
		보류액	건수	보류액	건수	보류액	건수	보류액	건수
정리보류액		21,965	9건	20,559	7건	32,554	11건	12,781	10건
	시효소멸	12,577	7건	17,550	6건	10,156	6건	10,025	9건
무재산		9,388	2건	3,009	1건	22,398	5건	2,756	1건

라) 미수납액 (결산서 p.37 ~ 40, p.153)

- 미수납액은 3억 22백 만원으로 전액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다음 [표]와 같음.

[표] '24년 소방특별회계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 %, 천원)

사유	과목	계	과징금	이행강제금	자녀연도수입	과태료
미수납액		321,601	10,800	20,000	210,558	80,243
		100%	3.4%	6.1%	65.5%	25.0%
	무재산	25,137			21,154	3,983
	행방불명	24,060			16,245	7,815
	납세태만	207,067		10,000	142,020	55,047
	폐업 또는 부도	34,241	10,800		19,104	4,337
	자금압박	23,942		10,000	8,169	5,773
	납기미도래	2,788				2,788
	소송계류	2,324			2,324	
	기타(분할납부)	1,123			623	500

○ 상기 [표]의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에 포함된 세입과목 중 지난연도수입(65.5%)이 주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 미수납 사유별로 보면 납세태만(64.4%), 폐업 또는 부도(10.6%), 무재산(7.8%)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납세태만 체납자의 경우 고의체납의 경우가 많으므로 적극적인 수납 독려와 체납 관리를 통해 이월액을 줄여야 할 것임.

마) 환급액 (결산서 p.37~40, p.157)

○ 2024년도 환급액은 11억 87백 만원으로 2022년 815천 원, 2023년 1백 845천 원 대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최근 3년간('24~'22) 세입결산 중 환급액 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징수결정액	수납액	환급액			
			행정기관 착오	내부거래	기타	
2024	1,001,009,974	1,000,667,814	1,187,171	20	1,180,000	7,151
			4건	1건	2건	1건
2023	986,444,210	986,129,215	1,845	1,845		
			2건	2건		
2022	902,173,485	902,015,562	815	735		80
			4건	3건		1건

- 주요 환급 내역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그외수입, 특별 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등 4건이며,

[표] '24년 환급액 발생사유

(단위 : 천원)

세입과목	환급액	사유	상세사유						
합계	1,187,171								
공유재산 임대료	7,151	기타	은평소방서 녹번119안전센터 임대기간 및 면적 감소 ○ 은평소방서 녹번119안전센터 감소현황 - 2024년 하반기 공유재산 임대계약시 면적축소 계약('24.5.31.) · (기존) 상반기 930.14㎡ → (변경) 하반기 216.65㎡ - 은평구청 계약기간 변경요청, 잔여기간 사용료 반환('24.10.25.) · (기존) '24.7.1.~12.31. → (변경) '24.7.1.~10.31. · 관련근거 :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 제5조(사용료의 반환) ※ 은평구청 사회적경제과-17303(2024.10.24.)호 「공유재산 사용(계약)기간 변경 요청(은평구사회적경제허브센터)」						
그외수입 (기타잡수입)	20	행정기관 착오	행동강령(여비사용) 이행실태 점검 결과에 따른 환수건으로 기반납치 리되어 환급 ※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1890(2024.2.26.)호「행동강령(여비사용) 이행실태 점검 결과에 따른 결정 결의 등록」						
특별교부세	280,000	내부거래	일반회계(세무과)→특별회계(소방행정과)로 계좌경정 처리(24년 1월) 하였으나 24년 소방행정과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세무과로 경정 처리 ※ 세무과-8739(2024.5.2)호「특별교부세 계좌 경정 요청」						
소방안전교부세	900,000	내부거래	소방안전교부세 특수수요 금액 감액 교부에 따른 일반회계(세무과) 반환처리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당초 교부금액</th> <th>변경 교부금액</th> <th>반납금액</th> </tr> </thead> <tbody> <tr> <td>6,700,000천원</td> <td>5,800,000천원</td> <td>900,000천원</td> </tr> </tbody> </table> ※ 행정안전부 안전사업조정과-2804(2024.11.1.)호「2024년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변경 안내」	당초 교부금액	변경 교부금액	반납금액	6,700,000천원	5,800,000천원	900,000천원
당초 교부금액	변경 교부금액	반납금액							
6,700,000천원	5,800,000천원	900,000천원							

-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 환급액 7백 만원은 은평소방서 녹번 119 안전센터의 임대 공간 일부를 은평구 사회적경제허브센터에 임대하던 중 은평구청의 계약기간 변경 요청('24.7.1.~'12.31.

→ ‘24.7.1.~‘10.31.)에 따라 이를 변경하면서 기납부된 사용료 (2천 3백 만원) 중 잔여기한에 대한 사용료를 환급한 것임.

- 다만, 본 계약건에 대한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 제12조¹³⁾에서는 사용허가의 취소·철회 요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은평구청)는 최소 2개월 전에 서면으로 계약 철회 요청 사유를 통지해야 하나 은평소방서는 서면 통보 없이 구두로만 요청받고 이를 수용한 것으로 확인됨.
- 이는 사전 행정검토 및 정당한 환급 사유 요건 검증이 미흡하였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의 변경 및 철회 요청 시 계약조건 이행 여부(서면통보, 배상조항 등)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다음으로, 특별교부세 2억 8천 만원 환급은 일반회계 세입의 수납액 2억 8천 만원과 동일한 것으로
- 소방재난본부는 2022년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라인 설치를 위해 교부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잔액을 잠실, 영동대교 노후 CCTV 등 영상감시장비 교체사업에 활용하고자 2023년 11월 2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용도변경 승인을 받고, 2024년 1월 소방특별회계 계좌로 해당 금액을 입금받았음.

13)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철회 요청)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의 취소·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철회의 의사와 사유를 표시한 서면을 서울특별시 은평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그러나 이를 2024년 추경 예산에 편성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세무과로부터 기존에 일반회계 세입으로 이미 처리된 항목을 다시 세입으로 편성하는 것은 중복세입에 해당한다는 통보¹⁴⁾를 받았고,
- 이에 따라 소방재난본부는 해당 교부세를 직접 세출에 활용하지 못한 채,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한 후 입금받았던 교부세 전액을 다시 서울시 일반회계로 환급하게 되었음.
- 이처럼 소방재난본부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소방사업에 예산 사용의 정당성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다시 환급하게 된 것은 예산 사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는 바, 이러한 문제를 회계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음.
- 그 외 소방안전교부세 환급은 2024년 담배분 개별소비세 재추계 결과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 특수수요 금액 감액 교부에 따라 일반회계(세무과)로의 반환처리 조치임.

14) 특별교부세 계좌 경정 요청(서울특별시 세무과-8739, 2024.5.2.)

2. 소방특별회계로 처리된 세입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계좌경정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사항

변경전	변경후	금액(원)	비고
2024년 소방특별회계 신한은행 11-000-43-10-00150 -24	2024년 일반회계 지방교부세(특별교부세) 신한은행 11-000-10-10-02252 -24	280,000,000	-사업내용 : 잠실, 영동대교 등 노후 CCTV교체 -용도변경 승인일: '23. 11월

※ 일반회계(세무과) → 특별회계(소방행정과)로 계좌경정 처리(2024. 1. 22.) 하였으나 '24년도 소방행정과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세무과로 재경정

2) 세 출 결 산

세 출 결 산 현 황 (순계규모)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24	1,026,006	725		1,632 (-1,632)	25 (-25)		1,026,732	977,202	14,265	13,886	379	149	35,115 (3.4%)
2023	974,871	5,866	511 (-511)	-	298 (-298)	2,410	980,737	952,479	726		726	127	27,405 (2.8%)
2022	945,971	4,065	2,746 (-2,746)	1,879 (-1,879)	126 (-126)	-	950,036	923,149	5,866	-	5,866	1,728	19,293 (2.0%)

가) 개 요

○ 2024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세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9,777억 26백 만원과 소방특별회계 1조 267억 32백 만원(순계예산¹⁵)을 포함하여 총 2조 44억 58백 만원(총계예산¹⁶)으로 이 중 지출액은 총계규모로 1조 9,266억 9백 만원이고 순계규모로 9,772억 2백 만원임.

- 순계규모 기준 다음연도 이월액은 1.39%인 142억 65백 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4%인 351억 15백 만원에 해당함.

나) 집행잔액(불용액)(결산서 p.43~88)

○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4%인 351억 15백 만원이며, 불용률 10% 이상 또는 집행잔액 1억원 이상 사업은 '소방행정과 기본 경비' 등 31건임. ([표]참조)

15) 순계예산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총계예산에서 회계간 진출입 등을 통한 재원의 중복계상 된 부분을 제외한 실제적 재정규모를 말함.

16) 총계예산 :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편성 운영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외형적 예산규모로서 예산서상의 수치를 단순합산 총계한 규모를 말함.

[표] 불용률 10% 이상 또는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현황(31건)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과)	사 업 명	예 산 내 역					불용내역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	불용액	비율(%)	
1	소방행정과	소방합동청사 건립 사업	1,087	924	5		157	14.5	
2	소방행정과	가락119안전센터 재건축	1,962	1,812			149	7.6	
3	소방행정과	소방관서 시설물 유지 보수	13,093	12,153			940	7.2	
4	소방행정과	예비비	1,813	0			1,813	100	
5	소방행정과	가산119안전센터 건립	80	42			38	47.5	
6	소방행정과	소방활동지원	29,448	28,732			716	2.4	
7	소방행정과	소방공무원 노사상생 협력사업	6	5			1	17.0	
8	소방행정과	소방직무능력 제고	2,864	2,548			315	11.0	
9	소방행정과	기본경비(소방정책사업비계정)	24,150	21,947			2,202	9.1	
10	소방행정과	인력운영비	738,291	717,821			20,470	2.8	
11	소방행정과	인력운영비(소방정책사업비계정)	21,148	19,828			1,319	6.2	
12	재난대응과	한강안전시스템 운영	5,024	3,366	698		960	19.1	
13	재난대응과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	9,187	8,744			442	4.8	
14	재난대응과	소방차 통행로 환경개선	608	508			100	16.5	
15	예방과	서울119소방동요대회 행사운영	34	28			6	20.0	
16	안전지원과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	12,856	12,132			723	5.6	
17	안전지원과	소방공무원 정신건강(PTSD 등)관리	917	771			146	15.9	
18	안전지원과	순직소방공무원 등 유가족 지원	49	23			26	53.1	
19	안전지원과	전산시스템 보강 및 유지관리(사비)	3,591	3,272	106		212	5.9	
20	안전지원과	동남권 안전체험관 건립	150	130			19	12.8	
21	자원관리과	119종합상황실 전산시스템 운영	3,215	3,049			165	5.2	
22	자원관리과	소방통신망 보강 및 유지관리	2,085	1,952			133	6.4	
23	자원관리과	기본경비(소방정책사업비계정)서울종합방재센터	1,100	842			257	23.4	
24	교육지원과	소방인재채용 및 양성	2,769	2,313			455	16.5	
25	교육지원과	소방학교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395	356			39	10.0	
26	교육지원과	기본경비(소방정책사업비계정)소방학교	1,217	1,059			158	13.0	
27	행정지원과	119항공대운영	15,250	2,743	11,800		706	4.6	
28	행정지원과	수난구조대 운영	1,637	987	95		555	33.9	
29	행정지원과	기본경비(소방정책사업비계정)119특수구조단	1,645	1,097			548	33.3	
30	운영1과	시민안전체험관 운영	1,804	1,550			254	14.1	
31	운영1과	기본경비(소방정책사업비계정)시민안전체험관	562	378			184	32.8	

○ 소방행정과 ‘기본경비(소방정책비계정)’는 예산현액 241억 5천 만원 중 22억 2백 만원(9.1%)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 주요 사유는 공공운영비(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 청사 유지비)의 9억 74백 만원, 국내여비(일반여비, 교육여비) 10억 66백 만원 등 주요 항목의 집행잔액으로 확인됨.

[표]24회계연도 기본경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통계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E=A-B-C-D)	비율(%)		주요내용
				집행률 (B/A)	불용률 (E/A)	
합 계	24,150	21,948	2,202	90.9	9.1	
사무관리비	8,286	8,157	129	98.4	1.6	조직경비, 당직비, 급량비 등
공공운영비	9,314	8,340	974	89.5	10.5	전기 가스 상하수도 청사유지비
국내여비	4,525	3,459	1,066	76.4	23.6	출장여비, 교육여비 등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83	281	2	99.3	0.7	직책수행, 기관운영경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20	201	19	91.3	8.7	공상위로금, 사기진작
부서운영업무추진비	994	985	9	99.1	0.9	조직운영 소요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528	525	3	99.4	0.6	직위별 직무수행경비

- 특히 국내여비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관외 출장 및 직원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워크숍 활동이 지속적으로 축소되었으며, 2024년에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 및 도심 집회 증가로 인해 출장이 최소화되고 대외기관 비교행정 등 외부활동도 감소한 사회적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다만, 최근 3년간 국내여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여비의 집행이 관련 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수시 점검이 필요해 보임.

[표] 최근 3년간('24~'22) 국내여비 집행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24	2023	2022
예산현액	4,525	4,181	4,238
지 출 액	3,459	3,017	2,335
집행잔액	1,066	1,164	1,903
집행률(%)	76.4%	72.2%	55.1%

- 재난대응과 ‘한강안전시스템 운영’은 예산현액 50억 24백만원 중 9억 6천 만원(19.1%)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 공공운영비에서 전화, 전기, 인터넷요금 납부 및 유지관리 용역 계약 집행 후 1억 76백 만원의 낙찰 차액과
 - 시설비 중 성수대교 CCTV 신규 구축 및 잠실·영동대교 노후 CCTV 교체 완료 등에 따른 7억 84백만 원의 낙찰차액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한 것임.
 - 한편, 본 사업은 2024년도 결산 기준 명시이월 5억 41백만 원, 사고이월 1억 57백만 원이 동시에 발생한 사례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입찰절차상 문제로 인한 법적 분쟁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됨.
 - 구체적으로는 월드컵·올림픽·구리암사대교 CCTV 신규 설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안서 평가 결과 2순위 업체(비

엔에스테크)가 낙찰업체(한국정보기술(주))의 입찰 자격에 이의를 제기하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보전 등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이 이를 2024.8.20.자로 인용 결정¹⁷⁾하면서 사업이 중단됨.

- 법원은 낙찰업체가 입찰 당시 제출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와 전혀 다른 타 업체(한화비전(주)) 제품을 제안서에 포함시켜 평가를 받은 점과 이후 기술협상 과정에서 자사 제품으로 변경한 점 등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위반 및 입찰 절차의 공정성 훼손으로 판단한 것임.

[표] 2024년 한강교량 방범CCTV 영상감시 관제시스템 구축(월드컵, 올림픽, 구리암사대교) 물품입찰공고

2024년 한강교량 방범CCTV 영상감시 관제시스템 구축(월드컵, 올림픽, 구리암사대교) 물품입찰공고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4-1191호)

(중간 생략)

3. 입찰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9조 제8항에 의거해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영상감시장치, 세부품명번호 4617162201)를 소지하고, 당해 품목을 직접 생산·공급할 수 있는 업체

(이하 생략)

1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결정문(2024.8.20.)

○ 사건번호 : 2024카합20950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보전 등 가처분

○ 채권자 : 주식회사 비엔에스테크

○ 채무자 : 서울특별시

○ 주 문

1. 채무자가 2024. 4. 24.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4-1191호로 공고한 ‘2024년 한강 교량 방범 CCTV 영상감시 관제시스템 구축(월드컵, 올림픽, 구리암사대교)’ 입찰과 관련하여, 2024. 6. 28. 채무자와 한국정보기술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채무자는 제1항 기재 계약의 이행을 중지하고 이를 속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1항 기재 입찰과 관련하여 채권자가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4.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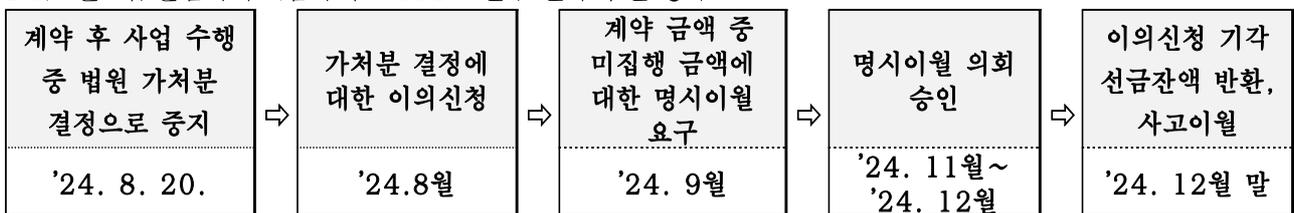
5. 소송비용 중 10%는 채권자가, 나머지는 채무자가 각 부담한다.



[그림] 제안평가 당시 입찰업체(한국정보기술) 제안서 카메라 물품

- 이에 따라, 소방재난본부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물품구매 및 정보통신공사를 위한 5억 41백 만원을 명시이월로 처리하였고 이후 선금으로 지급한 물품구매비에 대하여 미사용분을 계약업체로부터 1억 57백 만원을 환수처리 하고 이를 사고이월함.18)
- 이처럼 입찰 심사 과정에서 응찰자가 제출한 입찰서류의 진위여부를 제대로 검증 또는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행정력 낭비와 예산의 연례적 이월 등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는 바,
- 향후 입찰 사업 추진 시 입찰 참가 자격 및 입찰 서류에 대한 면밀하고도 정확한 검증절차가 요구된다 하겠음.

18) 월드컵·올림픽·구리암사대교 CCTV 신규 설치 추진 경과



계약구분	계약금액(A)	이월구분	이월액	집행금액	
				선금 지급액(B)	반환금(C)
물품구매	1,469,152	명시이월(A-B)	440,745	1,028,407	-
		사고이월(C)	157,188	-	157,188
정보통신공사	670,862	명시이월(A-B)	100,655	570,207	-

- 재난대응과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는 예산현액 91억 87백만원 중 일부 수도사업소에서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 공사를 후순위로 집행하는 등 사업 집행의 우선 순위에 밀려 4억 42백만원(4.8%)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됨.
- 본 사업은 소방재난본부가 예산을 일괄 편성한 후 수도사업소 8곳(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에 재배정하여 시행하는 구조¹⁹⁾이나,
- 일부 수도사업소의 경우 본연의 업무인 상수도 노후밸브 정비 사업에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가 후순위로 밀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표] 최근 3년간 수도사업소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 실적

	'24년									'23년									'22년								
	설치			보수			설치			보수			설치			보수											
	계획	실적	비교	계획	실적	비교	계획	실적	비교	계획	실적	비교	계획	실적	비교	계획	실적	비교									
합계	15	8	▼7	1,220	1,058	▼162	12	21	▲9	886	786	▼100	12	10	▼2	979	773	▼206									
중부수도사업소	3	1	▼2	421	136	▼285	2	7	▲5	256	126	▼130	2	0	▼2	260	190	▼70									
서부수도사업소	4	3	▼1	151	65	▼86	3	3	0	112	91	▼21	3	6	▲3	110	46	▼64									
동부수도사업소	3	3		142	240	▲98	1	7	▲6	93	152	▲59	1	1	0	104	65	▼39									
북부수도사업소	4	0	▼4	99	102	▲3	1	1	0	81	91	▲10	1	2	▲1	105	142	▲37									
강서수도사업소	0	0		119	174	▲55	0	1	▲1	70	83	▲13	0	0	0	95	47	▼48									
남부수도사업소	0	0		76	178	▲102	0	1	▲1	87	73	▼14	0	0	0	115	152	▲37									
강남수도사업소	0	1	▲1	116	121	5	4	0	▼4	121	111	▼10	4	1	▼3	115	106	▼9									
강동수도사업소	1	0	▼1	96	42	▼54	1	1	0	66	59	▼7	1	0	▼1	75	25	▼50									

19) 소방용수시설 재배정에 따른 개보수 절차



- 이는 화재취약지역 등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에서 소방용수 시설의 운영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용수시설의 사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게 되는 문제가 있는 바, 실적 중심의 성과관리 강화 등 수도사업소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음.

○ 안전지원과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은 예산현액 128억 56백만원 중 7억 23백만원(5.6%)을 불용처리하였는데,

- 주요 원인으로서는 굴절차 규격²⁰⁾ 변경(45m급 → 27m급)에 따른 6천 4백만 원의 차액과 그 외 소방차량(32대) 교체시 조달청 다수공급자 계약(2단계 경쟁)²¹⁾ 및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 입찰)²²⁾ 과정을 거치면서 발생한 낙찰차액(6억 59백만원)에 따른 것임.

20) 굴절차 규격(45m급과 27급)

구분	작업 높이	차량 제원			작업반경				전개시간		
		전장 (mm) 이하	전폭 (mm) 이하	전고 (mm) 이하	전 (m)	후 (m)	좌 (m)	우 (m)	아웃트리거 (m)		뿔/사다리 (턴테이블 회전 제외)
									전개폭(max)	전개 시간	
굴절차	27m급	9,500	2,500	3,600	18	19	18	18	6	30 초	97 초 (1분37초)
	45m급	12,000	2,500	3,900	22	19	19	19	6	30 초	138초 (2분18초)

21) 조달청 다수공급자 계약(2단계 경쟁)

- 대상차량 : 20대(펌프차 6, 물탱크차 10, 화학차 3, 행정차 1)
- 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 기준(조달청 고시)’
- 구매방법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체결된 물품 중 제안서 평가를 통해 납품대상 업체 선정

22)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 대상차량 : 13대(사다리차 53m급 3, 굴절차 45m급 1, 구조버스 5, 지휘통제단차 1, 조배연차 3)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구매방법 : 1단계 규격제안서 평가하여 적격자에 한해, 2단계 재무과 가격입찰서 개찰하여, 최저가를 제출한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

- 소방재난본부는 당초 강북소방서에 45m급 굴절차를 배치할 계획이었으나 차량 구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강북소방서의 요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좁은 골목과 저층 주택 밀집 등 진입 여건을 고려하여 현장 적응성이 높은 27m급으로 규격을 변경하여 구매한 것으로,
- 예산 편성 과정에서 수요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굴절차 사용을 위한 현장 여건 조사도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되는 바, 시정되어야 할 것임.

[표] 24년도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 계획 대비 실제 구매 비교표(단위 : 백만원)

사업명	차 종	계획				구매내역				구매 방법
		대수	규격	단가	금액	대수	규격	단가	금액	
소방 차량 교체 및 보강	펌프차	6	소형	370	2,220	6	소형	248	1,490	조달구매 (2단계경쟁)
	화학차	3	중형	320	960	3	중형	310	931	
	물탱크차	10	소형	299	2,986	10	소형	284	2,835	
	행정차	1	승합	50	50	1	승합	48	48	
	사다리차	3	53m	880	2,640	3	53m	895	2,684	입찰 (규격가격분리)
	굴절차	1	45m	754	754	1	27m	690	690	
	구조버스	5	중형	170	850	5	중형	165	825	
	긴급구조통제 단 지휘차	1	대형	1,000	1,000	1	대형	953	953	
	조명배연차	3	조연차	372	11,117	3	조연차	400	1,200	

- 안전지원과 ‘소방공무원 정신건강(PTSD 등)관리’는 예산현액 9억 17백 만원 중 1억 46백 만원(15.9%)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주요 잔액은 119안심협력병원 의료비 및 심신건강의료비 지원 1억 44백 만원, 기타 사무관리비·자산취득비에서 집행 잔액 2백 만원이 발생하였음.

[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PTSD 등) 관리 24년도 결산 내역 (단위 : 원)

예산과목	내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3개 과목	합 계	917,820,000	771,457,620	146,362,380
사무관리비	소방공무원 PTSD 예방 등	40,320,000	711,031,900	1,788,100
	(국고보조사업) 찾아가는 상담실운영 (국비 233,000,000)	566,000,000		
	찾아가는 한방의료서비스 운영	95,000,000		
	심신안정실 물품 유지보수	11,500,000		
공공운영비	119안심협력병원 의료비 지원	170,000,000	55,427,720	144,572,280
	소방공무원 심신건강의료비 지원 등	30,000,000		
자산 및 물품취득비	추나베드(6대) 구매	5,000,000	4,998,000	2,000

- 특히, 119안심협력병원 의료비 지원 실적이 저조한 원인과 관련하여 소방재난본부는 2023년까지는 병원진료 후 개인이 선결제하고 선결제한 금액을 환급신청하면 이를 지원하는 형태였는데 그러다 보니 시 예산에서 환급을 받고 추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실손의료보험에서도 이중으로 환급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여
- 2024년부터는 병원 선결제 후 우선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하고 그 이후에 본인 부담에 대해서만 시 예산에서 환급신청을 하도록 지원절차를 변경하였고 이에 예년 대비 119안심협력병원 이용 건수가 대폭 감소함에 기인한 것임.

[표] 2024년 119안심협력병원 의료비 지원 절차

구 분	2023년	2024년
예 산	286백만원	170백만원
지원한도	1일 40만원 한도	전년 동일
지급절차	병원진료 선결제 ⇨ 환급신청	병원 선결제 ⇨ 실손의료보험청구 ⇨ 환급신청

[표] 최근 5년간 119안심협력병원 이용 건수 및 지원현황

구 분	이용건수	총 결제금액(원)	보험 환급금액(원)	지원금액(원) (본인부담금 1일 40만원 한도 지원)
2024년	1,210	106,990,370	47,319,030	55,427,720
2023년	3,275	230,362,980	-	230,362,980
2022년	3,511	238,143,020	-	238,143,020
2021년	2,452	139,683,770	-	139,683,770
2020년	4,439	458,902,400	-	458,902,400

- 소방재난본부는 2023년까지 실손의료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119안심협력병원을 이용할 경우 선결제한 의료비를 전액 지원해 준 것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는 자칫 불필요한 진료를 양산하는 부정적 측면이 나타날 수 있는 바 의료비 지원 정책을 변경한 것은 바람직했다 사료됨.

○ 안전지원과 ‘순직소방공무원 등 유가족 지원’은 예산현액 4천 9백 만원 중 장학금 및 학자금의 2천 6백 만원(53.1%)이 미 집행 된 것임.

[표] 24년도 순직소방공무원 유가족 등 예산 사용 내역

예산과목 (통계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E=A-B-C-D)	비율(%)		주요내용
				집행률(B/A)	불용률(E/A)	
계	49	23	26	46.9	53.1	
행사운영비	13	13	0	100	0	정기 추모식 현충일 등 참배식 등
장학금 및 학자금	36	10	26	27.8	72.2	(위협직무)순직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

-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순직소방공무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 처음 시행된 신규 복지정책임.
- 예산 편성 당시에는 고등학생 2명, 대학생 8명 등 총 10명을 지원 대상으로 3천 6백 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연도인 2024년에는 대상자의 다수가 졸업, 중퇴, 미진학 등의 사유로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고등학생 1명(2백만 원)과 대학생 2명(각 4백 만원)을 대상으로 1천 만원의 장학금만 지급되어 잔액이 발생한 것임.
- 제도 시행 초기 단계로서 실제 수요 예측과 집행 간의 괴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는 지원 대상자에 대한 현황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 간 정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하겠음.
- 서울종합방재센터 ‘119종합상황실 전산시스템 운영’은 예산현액 32억 15백 만원 중 1억 65백 만원(5.2%)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음.

- 집행잔액은 지령전산장비 소모품 구입에 따른 사무관리비 잔액, 119종합전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의 예산 심사 절감 및 낙찰차액, 재난현장 문자알림서비스 사용료 집행 잔액, 노후 UPS 및 배터리 교체 사업의 낙찰차액 등임.
 - 여기서, 119종합상황실 전산시스템의 경우 유지관리 용역에도 불구하고 2024년 9월 지령전산망의 교환기용 L2스위치 불량으로 장비가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으나 데이터 패킷²³⁾만 정지되는 ‘행업(Hang-up)²⁴⁾’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이중화 체계²⁵⁾가 작동하지 못하면서 119 신고 전화에 19분간 장애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음.
 - 따라서 119종합상황실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에 대한 과업의 범위와 과업 수행 현황 등을 재점검하여 동일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소방학교 ‘소방인재채용 및 양성’은 예산현액 27억 69백 만원 중 4억 55백 만원(16.5%)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주요 사유는 경기소방학교 실화재 위탁훈련비로 편성된 8천 9백 만원이 서울소방학교 자체 간이실화재훈련시설을 활용한 교육 실시로 대체 시행함에 따라 지출되지 않았으며,

23) 데이터 패킷 : 통신망을 통해 전송하기 쉽도록 자른 데이터의 전송 단위

24) 행업(Hang Up) : 통상적으로 서버가 실행은 되고 있지만, 어떤 요청 시에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25) 통신망 이중화 체계: 서울소방재난본부는 119출동시스템 통신망을 2개의 통신사로 구성하여 장애 발생 시 즉각 다른 통신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24시간 365일 무중단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아울러, 신규임용예정자 수가 당초 계획(560명) 대비 306명 감소한 254명으로 확정되면서 교육생 급식비(1억 37백 만원), 교재 발간 및 구입비(1천 3백 만원), 극기훈련비, 생활관 운영비, 침구류 세탁비 등 관련 경비(1억 53백 만원) 등이 일부 불용되었기 때문임.

[표] 소방인재채용 및 양성 불용 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주요내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내역		불용사유
				집행잔액(E=A-B)	불용율%	
계		2,769,325	2,313,725	455,600	16.5	
1	실화재훈련위탁교육비	89,150	0	89,150	100	간이훈련시설 설치 후 자체교육 실시
2	교육생 급식비	580,480	443,560	136,920	23.6	변경계약 [교육생 감소로 인한]
3	교재발간 및 구입비	125,386	111,896	13,490	10.8	
4	낙찰차액,지출잔액	1,841,889	1,628,849	213,040	11.6	신규임용예정자 감소에 따른극기훈련비·생활관운영 및 침구류세탁비 등에 잔액 및 교재발간 등의 차액
5	재료비	82,870	81,870	1,000	1	잔액
6	포상금	14,550	12,550	2,000	13.5	잔액

- 결과적으로는 실화재 위탁교육의 미집행과 교육인원 감소에 따른 지출 내역의 축소가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 2023년도에도 동일한 사유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던 만큼 실

화재 교육의 위탁 여부 등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다 신중히 검토하고 신규임용예정자 수도 보다 정확히 추계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임.

- 119특수구조단 ‘수난구조대 운영’은 예산현액 16억 37백 만원 중 5억 55백만원(33.9%)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 주요 원인은 여의도 수난구조대 등 선박 정기검사 및 수리비와 유류비 잔액(1억 34백 만원), 에어보트²⁶⁾ 제조·구매 사업의 계약해지에 따른 예산 전액(3억 43백 만원)을 불용 처리한 것에 따른 것임.
 - 여기서, 에어보트 사업은 한강 결빙 시 고속구조보트 운항의 어려움을 보완하고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해 추진되었으나 에어보트를 건조하기 위한 설계 과정에서 국내 자동차 회사의 엔진 사용에 지적재산권 문제로 어려움에 봉착하였고 또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검사기준 부재 등의 사유로 설계 승인이 반려되면서 2024년 12월 사업 계약이 해지됨.
 - 따라서, 에어보트와 같이 새로운 설계를 통해 건조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산부터 편성하기 보다는 그 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건조 과정별로 면밀히 사전검토하여 편성된 예산이 이처럼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26) 항공기형 프로펠러로 추진되고 항공기 또는 자동차 엔진으로 구동되는 바닥이 평평한 선박

[표] 서울119특수구조단 에어보트 사업 계약해제사유

○ 사업개요

- 사업명: 서울119특수구조단 에어보트 제조·구매
- 배경예산: 금343,200,000원 (전액 불용)

○ 사업 추진현황

- '24. 3월: 기본계획 수립
- '24. 5월: 사전규격공개 (결과: 의견 없음) 및 입찰공고
- '24. 6월: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계약 체결 및 착수
- '24. 7월: 선박 설계 및 건조 실무 회의 (총2회)
- '24. 9월: 선박 설계 검토 승인 신청 (한국해양교통공단)
- '24. 11월: 선박 설계 승인 반려 (한국해양교통공단)
- '24. 12월: 계약 해제

○ 계약해제사유

1) 당초 규격서에 유지관리가 용이한 국내산 엔진 2기로 에어보트를 건조하려 발주 하였으나, 국내산 엔진의 ECU(ENGINE CONTROL UNIT) 프로그램은 업체(현대자동차)의 지적재산권으로 인해 변경이 어려워 국내산 엔진 장착이 불가하며,

2) 엔진 2기 및 프로펠러 2기 직결방식은 발주부서에서 원하는 규모의 선박 제작이 어렵고, 엔진 2기 및 프로펠러 1기 벨트체결방식은 검사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에 도면 검토 결과 설치에 관한 검사기준이 없음.

3) 따라서 국내산 또는 수입산 엔진 사용 가능 여부와 엔진 수량 및 KOMSA의 승인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규격서를 수정하고자 함.

다) 예산이용(결산서 p.91) : 해당없음

라) 예산전용(결산서 p.92)

○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27)에 의해 각 정책사업 내의

27)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표] 2024회계연도 예산전용 내역

(단위: 천원)

연번	과 목			전용금액		승인 일자	사 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합 계 (2건)				25,105	25,105		
1	소방재난 본부 소방행정 과	소방직무능력제고	201-01 사무관리비	23,765		‘24.8.30 .	해피머니 상품권 거래가 중단됨에 따라 상품권 보상을 위하여 예산 전용
		소방직무능력제고	303-01 포상금		23,765		
2	소방재난 본부 예방과	서울안전한마당	201-03 행사운영비	1,340			
		몸짱 소방관달력 기부행사	303-01 포상금		1,340		

-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여파로 해피머니 상품권 거래가 중단됨에 따라 직원에게 제공한 상품권 보상예산 확보를 위하여 예산 전용 2건에 2천 5백 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음.
- 이는 민간 결제대행사의 경영 불안정이라는 외부 요인에 기인한 불가피한 조치라 하겠음.

마) 예산이체(결산서 p.93) : 해당없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바) 예산변경(결산서 p.94)

- 예산의 변경사용은 동일한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 하에 상호융통 사용하여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재난 취약계층 소방안전대책’ 등 총 3건에 16억 32백 만원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음.([표] 참고)

[표] 2024회계연도 예산변경 내역

(단위: 천원)

연번	과 목			전용금액		승인 일자	사 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합 계 (3건)				1,632,400	1,632,400		
1	소방재난 본부 예방과	재난취약계층 소방안전대책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037,400		'24.3.21.	기 편성된 예산 통계목(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 탁사업비)이 사업시행 주체(공기관)가 없어 전년도에 편성한 통계목으로 예산 변경
		재난취약계층 소방안전대책	301-02 사회보장적수 혜금(취약계층)		1,037,400		
2	소방재난 본부 예방과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3,950		'24.11.21.	성능위주평가단 심의건수가 증가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변경 필요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	201-02 공공운영비	6,050			
		예방업무추진 향상	201-01 사무관리비		10,000		
3	소방재난 본부 소방행정 과	인력운영비(소방정책사 업비 계정)	101-02 기타직보수	585,000		'24.12.2 4.	공무직 보수 부족으로 인한 예산 변경
		인력운영비(소방정책사 업비 계정)	101-03 공무직(무기계 약)근로자보수		585,000		

- 먼저, ‘재난취약계층 소방안전대책’ 사업은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등)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주택화재경보기) 보급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정상적 위탁사업비 통계목에서 사회적보장적 수혜금(취약계층) 통계목으로 10억 37백 만원을 변경한 것임.
- 당초 본 사업은 소방재난본부가 직접 수행하던 방식이었으나, 2024년도 예산 편성 당시 서울시의 예산 조정안에 따라 행정 효율성을 고려하여 SH공사 산하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통한 위탁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 사업 추진 과정에서 SH공사가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공동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이 회신²⁸⁾됨에 따라 세부사업 통계목을 다시 변경하여 2023년과 동일하게 소방재난본부가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것임.
- 사업 공백 없이 신속히 주체를 전환하고 실효성 있는 보급을 이어간 점은 바람직하나 사전 협의 부족으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가 발생한 점은 아쉬움이 있으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면밀한 사전 검토가 요구됨.

28)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 부서 선정 요청에 대한 회신(서울주택도시공사 경영관리부-643(2024.2.21.))

가. 본 사업대상 주택과 SH관리대상 임대주택 유형의 상이성

나. 본 사업 해당업무와 SH주거안심종합센터 업무범위의 상이성

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지방공사가 수행(대행)할 수 있는 사업에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관련 업무는 해당하지 않음.

- 다음으로, ‘예방업무 추진 향상’ 사업은 성능위주 설계 확인 평가단 운영 심의회 건수 증가(29회→46회)로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1천 만원을 변경 사용한 것임.
- 성능위주 설계 확인 평가단 운영 심의회 건수가 당초 예상한 29회에서 46회로 대폭 증가했다는 것은 예산 편성 당시 수요 조사가 면밀하지 못했음을 방증하는 바, 주의가 요구됨.
-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소방정책사업비 계정)’의 경우 공무원(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부족으로 5억 85백 만원을 변경한 것임.

사) 예비비(결산서 p.97) : 해당없음

아) 차년도 사고이월²⁹⁾(결산서 p.185~186)

- 2024회계연도 사고이월은 ‘소방합동청사 건립 사업’ 등 6개 사업으로 사고이월 대상사업 예산현액 200억 73백만원 대비 1.9%인 3억 79백 만원([표]참조)을 사고이월 하였음.

29) 사고이월이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에 규정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사항으로서 회계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등을 말함.

[표] 2024년도 서울소방재난본부 사고이월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관리부서	사업명	예산 현액	사고 이월액	집행 잔액	이월률 (%)	이월사유
합계		20,073	379	1,404	1.9	
소방행정과	소방합동청사 건립 사업 (시설비)	1,087	5	157	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유산 발굴 유구 창고 보관 용역 문화유산 보관 용역 계약기간('24.12월~'25.11월) 으로 기성금 이월 ※'25년은 12월분만 편성함
소방행정과	거여119안전 센터 이전 신축 (시설비)	5,459	38		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계 용역비 '24년 설계 용역비를 95% 공정으로 예산 편성 하였으나 실제 공정률이 지연되어(70%) 잔액 이월
재난대응과	한강안전시스템 운영 (시설비)	5,024	157	960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드컵, 올림픽, 구리암사대교 CCTV 신규 구축 제안서평가 2순위 업체가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사업수행 중지, 선금 잔액 반환금 이월
재난대응과	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 관리 (전산개발비)	4,912	73	75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9구급대 응급의료 스마트 플랫폼 구축 의사 집단행동으로 병원과 시스템 개발 협의가 지연 되다가 계약 체결('24.11월). 준공 기한('25.2월) 미도래로 잔금 이월
안전지원과	전산시스템 보강 및 유지 관리 (전산개발비)	3,591	62	212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소방 통합 누리집(홈페이지) 구축 '24.12월 용역 완수 예정이었으나 업체의 과업 이행 지연으로 잔금 이월 ※ 지연배상금 부과 예정
안전지원과	전산시스템 보강 및 유지 관리 (자산취득비)		44			

- 먼저, '소방합동청사 건립' 사업의 경우, 기존 종로구청과 종로소방서를 통합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7년까지 총 1,421억 원을 투입하여 소방재난본부, 종합방재센터, 종로소방서가 입주하기 위한 통합청사를 건립하는 장기계속사업임.

[표] 소방합동청사 건립사업 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3(수송동 146-2)
- 사업기간 : (변경전) '19. 01월 ~ '25. 12월 ⇒ (변경후) '19. 01월 ~ '27. 12월
⇒ 변경사유 : 舊 수송초등학교 철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 성능위주 설계 진행 등으로 사업일정이 변경되었음
- 소요예산 : 1,421억 원(건축 950억, 상황실 구축비 등 471억)
[당초계획] 754억원 (건축 489억원, 상황실 등 전산시스템 265억원)
- 규 모 : 16/6층, 연면적 22,235㎡, 부지면적 1,987㎡
[당초계획] 지상 13층, 지하 1층, 연면적 15,944㎡, 부지면적 1,987㎡
- 입주부서 : 소방재난본부, 종합방재센터, 종로소방서
※ 종로구 통합개발 규모
 - 대지위치 : 종로구 삼봉로43 (현 종로구청사, 종로소방서 부지)
 - 사업규모 : 16/6층 / 연면적 83,863㎡/ 부지면적 8,622㎡
 - 입주기관 : ▮ 종로구청·구의회·보건소
 └ 소방재난본부·종합방재센터·종로소방서
 - 건축물용도 : 공공청사, 문화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 전체사업비 : 4,192억원 (서울시 1,421억원, 종로구 2,771억원)
 - ※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실시설계 완료 시 물가상승분 반영 등으로 사업비 변경 예정이고,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기간 결정될 예정임

- 당해연도에 예산현액 10억 87백만원 중 1억 57백 만원이 불용되고 0.5%인 5백 만원을 사고이월함.
- 사고이월 사유는 소방합동청사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문화유산 발굴유구의 이전·복원에 따른 보관료 지급 시점이 회계연도와 일치하지 않음에 기인하며,
- 해당 보관료는 종로구청이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11월 30일 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1년 단위 차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임.

- 여기서,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전체 보관료 중 22.91%를 분담하고 있으며 2024년도 계약분(2024.12.1.~2025.11.30.)에 해당하는 5백만원의 지급 시점이 2025년 11월 이후로 예정됨에 따라 2024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한 것임.
- 한편, 유구 보관료는 2022년부터 매년 동일한 구조로 편성·지급 되어 왔으며 같은 사유로 사고이월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 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표] 소방합동청사 건립사업 최근 3년간 유구 보관료 사고이월 내역

회계연도	세부사업	분담비율(%)	사고이월액(원)	계약기간	주요내용
2022회계연도	문화재 발굴유구 이전·복원 용역 (유구 보관료)	23.75%	5,392,000	'22.12.01.~ '23.11.30	사업부지내 발굴유구 보존 및 창고 보관료
2023회계연도		22.91%	5,200,000	'23.12.01.~ '24.11.30	
2024회계연도		22.91%	5,200,000	'24.12.01.~'25.11.30.	

- ‘거여119안전센터 이전·신축’ 사업³⁰⁾은 송파구 위례지구 택지 개발³¹⁾로 인한 유입인구 증가 및 고층화로 소방력의 추가배치가 필요하여 거여119안전센터를 이전 신축려는 것으로, 당해연도 예산현액 54억 59백 만원 중 0.7%인 3천 8백 만원을 사고이월함.

30) 거여119안전센터 이전·신축

○ 위치 : 송파구 거여동 산 30

○ 규모 :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290㎡

○ 기간 : 2023.04. ~ 2026.09. ('24년 12월 현재 설계용역 공정률 : 70%)

○ 총사업비 : 12,248백만원

31)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거여동, 성남시, 하남시 일원을 대상으로 2006. 07. ~ 2022. 12. (개발면적 6,754천㎡, 주택건설 총 44,458호) 택지 개발 예정 지구로 지정되어 추진된 사업

- 이는 본예산 편성 당시 예상공정률을 95%로 예측하고 설계용역비 2억 8천 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4.12. 기준 실제 공정률이 70% 수준에 그쳐 당해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금액 3천 8백만원을 사고이월 한 것으로,
 - 향후에는 실질적인 추진 일정과 외부 변수 등을 고려하여 공정률 산정의 정밀도를 높여야 할 것임.
- ‘한강안전시스템 운영’ 사업은 전체 사업비 50억 24백 만원 중 월드컵·올림픽·구리암사대교 CCTV 구축 사업이 2순위 업체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보전 등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인용 (본문 p.35 참고)함에 따라 계약이 정지되면서 선금 10억 28백 만원 중 사용분(8억 71백만원)을 제외한 1억 57백 만원을 환수하고 이를 사고이월 한 것임.
 - 다음으로 ‘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 관리’ 사업은 의료기관 응급실 혼잡도 정보 및 병상 정보를 이용하여 구급대에 실시간 응급 의료자원을 제공하고, 병원에 환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스마트 플랫폼 구축 사업³²⁾으로 예산 현액 49억 12백 만원 중 7천 3백 만원(1.5%)을 사고이월함.
- 이는 2024년 상반기 의사 집단행동³³⁾으로 사업대상 선정에 어려움이

32) {119구급대 응급의료 스마트 플랫폼 구축 사업}

- 사업대상: 서남병원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3개월

발생하였고 이후 서남병원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플랫폼 구축 기간 3개월(2024.11.06.~2025.02.03.)이 회계연도 변경 시점에 걸치게 되어 부득이 7천 3백 만원을 사고이월 한 것임.

- 마지막으로 ‘전산시스템 보강 및 유지 관리’ 사업은 소방정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보강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예산 현액 35억 91백 만원 중 1억 6백 만원(3%)을 사고이월함.

- 주요 사유는, 클라우드 기반 소방 통합 누리집 재구축 용역³⁴⁾을



- 병원 응급실 혼잡도 제공을 통한 신속한 병원 선정 시스템 구축
- 병상정보를 이용한 이송 가능 병원 목록 제공시스템 구축
- (병원) 신속한 진료를 위한 환자정보 및 구급차 도착(시간)정보 제공

33) 2024년 2월부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사 파업

34) 클라우드 기반 소방 통합 누리집 재구축 용역 발주 계획(안전지원과-10704, 2024.5.14.)

- 사업명: 클라우드 기반 소방 통합 누리집 재구축 용역
- 소요예산: 금355,079,000원(금삼억오천오백칠만구천원)
 - 통합발주(시스템 개발) : 355,079,000원
 - 직접구매(상용SW 구매) : 92,218,000원
 - 별도용역(정보시스템 감리) : 58,817,000원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80일(6개월)

예산과목	산출금액(천원)	세부 산출내역
합계	355,079	
전산개발비	311,079	응용SW 재개발, 개인정보양향평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	44,000	콘텐츠 관리 시스템 (CMS)

- 사업내용
 - 누리집 디자인 개선 및 콘텐츠 정비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및 표준화에 기반한 누리집 개선
 - 누리집 통합관리 시스템(CMS) 재구축
 - 웹 취약점 보완 및 공공기관의 보안 수준 준수
 - 별도 운영 중인 서울종합방재센터 누리집 추가 통합 구축
 - 클라우드컴퓨팅법 제12조, 제20조 등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 전환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약업체((주)엠티데이터)의 과업(민간 클라우드와 행정망 간 통신망 구축 등) 지연으로 당초 예정된 사업기간(24.6.19.~24.12.15.) 내 납품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용역 잔금(전산개발비 6천 2백 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천 4백 만원)을 사고이월 한 것임.

[표] 클라우드 기반 소방 통합 누리집 재구축 용역 사고이월 개요

누리집 사고이월 현황

- 사업 명: 소방 통합 누리집 재구축
- 사업기간: '24. 6. 19. ~ 12. 15.(6개월)
- 업체 명: (주)엠티데이터(대표: 옥정원)
- 개발 용역 준공금액: 금354,200천원

구 분	계약금액	선금청산액	지급잔액(사고이월)
전산개발비(207-02)	310,200	247,940	62,260
자산및물품취득비(405-01)	44,000	-	44,000
합 계	354,200	247,940	106,260

- 준공신고일
 - (1차) 2025. 2. 21.(금) 검사신청 - 2. 28.(금) 검사 부적합

◆ 보완사항: 핵심기능 요구사항 미구현으로 보완 필요(붙임2) 안전지원과-4359(25.2.28.)

- (2차) 2025. 3. 12.(수) 검사신청 - 3. 17.(월) 검사 적합
- (집행) 2025. 3. 19.(수) - 잔금지급
- 지연배상금 (계약금액 × 지체일수 × 지연배상금률)
 - 지연배상기간: 2024. 12. 17. ~ 2025. 3. 17.
 - 지연배상금 : 금41,901,860원
(계약금 354,200,000원 × 지체일수(91일) × 지연배상금률(0.13%))

[붙임]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 및 개선건의 사항 : 5건

연번	구분	시정 권고사항	내용	조치계획	소관실국 (부서명)
49	시정 권고	법적근거 없는 과납금 환급으로 인한 세수감소	<p>공유재산임대료는 사용계약에 의거하여 세입이 안정적으로 예측되어야 함에도, 중도 계약변경에 의하여 임대료 수입이 감소하였으므로 세입추계 오류에 해당.</p> <p>또한 임차인의 임대면적과 임대기간 감소 변경요청으로 인한 공실발생이므로 사용료를 반환할 법적근거가 없음. 향후 임대공간 운영 시 세수가 감소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야 함.</p>	소방재난본부 산하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각 소방관서의 장을 분임 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하여 해당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리와 사무가 위임되어 있으나, 향후 유사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본부에서 단계별 업무처리절차 구체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조건 표준화, 반기별 공유재산 사용허가 실태 점검 등을 추진하여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50	시정 권고	합리적 교육여비 편성 및 집행을 통한 교육 강화	공무직의 경우 교육여비의 집행을 제고를 위해 직원들의 요구에 따른 다양한 교육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소방공무원의 경우는 교육여비 집행을 제고 노력과 함께 교육여비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알 수 있도록 공무직과 같이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여비가 통계목으로 포함되는 세부사업을 만들어서 집행할 것을 권고함. 다만, 소방공무원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의 교육여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p>공무직 교육여비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해 법적 의무교육, 직무교육 등의 수요조사를 통해 집행 가능한 예산편성을 하겠음.</p> <p>소방공무원 교육여비 편성은 분야별 교육사업 부서와 예산부서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p>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51	시정 권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구분의 적절성과 엄격한 계약업무 수행 필요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 1호에서도 회계연도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내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는 사고이월하도록 규정한 취지에 따라, 법원의 가치분 인용결정으로 인해 사업을	향후 유사 사례 발생을 방지하고, 불가피하게 예산이월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로 적절하게 구분·처리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여 예산집행의 합리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재난대응과)

연번	구분	시정 권고사항	내용	조치계획	소관실국 (부서명)
			<p>중지한 것은 불가피한 사유로 보고 명시이월이 아닌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집행이라 판단됨.</p> <p>향후 설치될 교량 CCTV 설치계약과 관련하여 입찰 공고시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엄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권고하며, 추가적으로 교량별로 분리 발주하는 방법도 고려가 필요.</p>	<p>또한, 사업비 편성 및 계획수립 단계부터 교량별로 개별 분리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으며, 입찰공고 전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일상감사부서, 재무과, 필요한 경우 법률자문을 거쳐 사전 검토 절차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음</p>	
13	개선 건의	공사기간 합리적 예측을 통한 예산절감 필요	<p>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물가 변동으로 인해 공사비용이 급증할 뿐만 아니라, 준공 지연으로 인한 시민 불편 가중, 행정 차질 등은 큰 문제임.</p> <p>소방합동청사 매장 문화재 발굴의 경우 인접한 사례를 검토하였다면, 매장문화재 발굴 기간에 대해 기존보다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됨. 그러므로, 향후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소방재난본부와 종로구가 보다 면밀한 사업정보 검토와 사전 협력을 통하여 철저한 계획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 건의함.</p>	<p>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의 공사기간은 전문가의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로 결정되며, 2025년 5월 심의 결과 54개월로 확정됨.</p> <p>향후 사업계획 추진시 유사 건설공사 단계별 사업 과정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지연요인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더불어 사업추진 대표기관인 종로구청과 공정회의 강화 등을 통해 긴밀한 사전협력과 철저한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음.</p>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14	개선 건의	소방공무원 정신건강(PTSD 등) 관리 사업의 세분화된 운영방안 모색	<p>현재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내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은 사업규모도 크고, 국고보조사업이므로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여 집행할 것을 권고함.</p>	<p>2026회계연도 예산 협의 시, 각종 현장에서 정신건강 장애 위험에 직면해 있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하여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국고보조사업을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세부사업으로 분리·편성하여 ① 국고보조사업 예산집행을 일원화하고, 별도 단일 사업으로 편성을 통해 ② 집행잔액과 보조금 정산잔액 표기 혼란을 방지하겠음.</p>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50. 법적근거 없는 과납금 환급으로 인한 세수감소

[세입 징수 / 소방재난본부]

가. 현황 및 문제점

은평소방서 녹번119안전센터의 '24년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예산현액은 2억 17백만원이었으나 실 수납액은 8천3백만원에 불과하였음. 임대료수입 감소는 은평구사회적경제허브센터의 계약 변경 요청에 따른 면적감소와 임대기간 감소로 인한 공실 때문임.

사회적경제허브센터의 계약변경 요청에 따라 은평소방서는 선수로 받았던 임대료 중 60일 잔여기한 사용료 7,151천원을 반환함. 사용료의 반환은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 제5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해당 조항은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만 과납금을 반환하는 내용임.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 제10조에(사용허가 취소)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변경 요청은 허가 취소 사유가 아니므로, 반환의무가 없는 과납금에 해당함.

은평소방서 녹번119안전센터 감소현황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임대기관	은평구청(사회적경제허브센터)		
임대면적	930.14㎡	216.65㎡	713.49㎡ 감소
임대기간	2024.7.1.~12.31.	2024.7.1.~10.31.	60일 감소 '24.11월 이후 공실
임대료	21,244천원	14,093천원	7,151천원 환급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은평소방서)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제10호는 제1조에서 정한 사용·수익 목적에 시민을 위한 이용편의 제공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청사, 관사, 학교, 병원, 도서관 등 서울특별시(은평소방서)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에 필요할 때
2. 도로, 공원, 하천, 제방, 유수지, 구거 등 공공용 사업에 필요한 때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때
4. 허가받은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때
5. 허가받은 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때
6.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정하여진 기일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제3항 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7. 거짓 진술, 부실한 증명서류 제시 등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또는 수익 허가를 받은 때
8. 서울특별시 은평소방서의 승인 없이 허가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때
9.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16조에 의한 서울특별시 은평소방서의 지시 또는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10.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사용·수익행위를 개시하지 않거나 사용·수익기간 중 30일 이상 사용·수익행위를 하지 않아 허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단, 서울특별시(은평소방서)의 승인을 받아 사용·수익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11. 업무와 관련된 민·형사소송이 확정되거나 업무관련자가 기소되는 등 사용·수익허가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 달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시정권고

소방재난본부의 공유재산임대료는 2024년 큰 폭으로 그 수입이 감소함. 예산편성의 기본 원칙은 세입 재원을 정확히 포착하고, 당해 연도 특수요인 등을 종합 분석하여 그 규모를 적정하게 전망하는 것임.

공유재산임대료는 공유재산 사용계약에 의거하여 세입이 안정적으로 예측되어야 함에도, 중도 계약변경에 의하여 임대료 수입이 감소하였으므로 세입추계 오류에 해당함. 또한 임차인의 임대면적과 임대기간 감소 변경요청으로 인한 공실발생이므로 사용료를 반환할 법적 근거가 없음. 향후 임대공간 운영 시 세수가 감소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야 함.

51. 합리적 교육여비 편성 및 집행을 통한 교육 강화

[전문기관 위탁교육훈련 등 / 소방재난본부]

가. 현황 및 문제점

소방재난본부는 직역별로 공무원직(공공안전관 포함)과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육여비도 이에 따라 편성, 집행되고 있음. 공무원직은 예산서상 『전문기관 위탁교육 훈련』 세부사업의 공무원 교육여비 통계목으로 편성하였으나, 소방공무원은 기본경비의 국내여비에 교육여비와 일반여비를 통합편성하고 필요에 따라 구분하여 집행하고 있음. 다만 소방공무원의 경우 직속기관인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학교, 119특수구조단, 시민안전체험관은 본부와 별도로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음.

공무원직의 교육여비는 696만원이 편성되어 212만원이 집행, 48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30.4% 집행률을 보였으며, 본부의 소방공무원 경우 국내여비에서 교육여비와 일반여비를 집행한 바, 편성된 국내여비 49억 8,387만원중 37억 960만원이 집행되어 74.4%의 집행률이 나타났으며, 국내여비 집행액 중 교육여비는 15.7%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됨.

이와 같이 공무원직의 교육여비와 소방공무원의 국내여비(교육여비 포함) 집행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공무원 대상 법정 의무교육에서 집합교육이 아닌 사이버교육 희망자가 늘고, 코로나 이후 관외 출장 및 직원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워크숍 활동이 감소하였으며, 의사 집단 행동 장기화 및 도심집회 증가에 따른 출장 최소화와 대외기관 비교 행정 등 대외업무 감소 때문이라고 소관부서는 설명함.

공무원직은 『전문기관 위탁교육 훈련』 세부사업을 통해 교육여비가

집행되는데 반해 소방공무원을 위한 교육훈련 여비는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국내여비에 포함하여 집행하고 있어 체계적인 교육계획에 따른 예산집행이 되지 않고 또한 그 결과를 평가하기도 어렵게 되어 있다고 판단됨.

2024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교육여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전문기관 위탁교육 훈련	공무원 교육여비	6,960	2,118	4,842	30.4%
기본경비	국내여비	4,983,874	3,709,605 (100%)	1,274,269	74.4%
	교육여비		581,337 (15.7%)		
	일반여비		3,128,267 (84.3%)		

최근 3년간 소방공무원을 위한 본부 국내여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2022년	4,689,062	2,513,308	2,175,754	53.6%
2023년	4,635,876	3,283,273	1,352,603	70.8%
2024년	4,983,874	3,709,605	1,274,269	74.4%

나. 시정권고

공무직의 경우 교육여비의 집행률 제고를 위해 직원들의 요구에 따른 다양한 교육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소방공무원의 경우는 교육여비 집행률 제고 노력과 함께 교육여비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알 수 있도록 공무직과 같이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여비가 통계목으로 포함되는 세부사업을 만들어서 집행할 것을 권고함. 다만, 소방공무원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의 교육여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52.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구분의 적절성과 엄격한 계약업무 수행 필요

[한강안전시스템 운영 / 소방재난본부]

가. 현황 및 문제점

한강안전시스템 운영사업은 수난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자살자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한강교량 CCTV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려는 단년도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본예산에 47억 4,500만원 편성 후, 추경 예산으로 2억 8,000만원을 증액한 예산현액 50억 2,500만원중 33억 6,614만원을 집행하고 5억 4,140만원을 명시이월, 1억 5,719만원을 사고이월로 처리함.

추경예산으로는 2017년에 설치된 잠실과 영동대교의 노후된 CCTV를 교체하는데 집행하였으며, 본예산으로 집행된 월드컵·올림픽·구리암사대교 CCTV 신규구축사업을 위해 집행한 바, 동 사업은 물품구매와 정보통신공사로 분리하여 각각 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음.

물품구매 계약과 관련하여 제안서 평가결과 2순위 업체가 신청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보전 등 가처분을 법원에서 인용결정함에 따라, 물품구매와 함께 동시 진행된 정보통신공사도 중단하게 되어 물품구매와 정보통신공사에서 5억 4,140만원의 명시이월이 발생함. 더하여, 물품구매에서 계약금액의 70%를 선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사업수행을 위해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계약업체로부터 환수하여 1억 5,719만원을 사고이월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함. 이 때, 계약금액의 70%를 선금으로 지급한 것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하여 최대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임.

결과적으로 동일 사업에 대한 예산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동시에 발생하였으나, 이는 단년도 사업이고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계약금액의 70%를 선금으로 지출하였기 때문에 명시이월보다는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집행이라 할 수 있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인 점은 같으나, 명시이월은 미리 의회의 승인으로, 사고이월은 결산을 통해 사후적으로 승인을 얻는다는 차원에서 다르고, 명시이월은 다음 회계연도에 재이월이 가능함.

물품구매 계약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당일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제기된 TTA인증 보유 여부의 직접생산증명확인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 재무과의 답변을 거쳤다고는 하지만 다른 참가업체가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원보전 등 가처분을 인용한 것은 입찰공고 시 입찰참가자격 조건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고 여겨짐.

한강안전시스템 운영사업 예산집행현황

(단위 : 천원)

기정예산	추경예산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낙찰차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4,745,000	280,000	5,025,000	3,366,140	541,400	157,188	784,517

계약별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

(단위 : 천원)

계약구분	계약금액(A)	이월구분	이월액	집행금액	
				선금 지급액(B)	반환금(C)
물품구매	1,469,152	명시이월(A-B)	440,745	1,028,407	-
		사고이월(C)	157,188	-	157,188
정보통신공사	670,862	명시이월(A-B)	100,655	570,207	-

나. 시정권고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1호에서도 회계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는 사고이월하도록 규정한 취지에 따라, 법원의 가치분 인용결정으로 인해 사업을 중지한 것은 불가피한 사유로 보고 명시이월이 아닌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집행이라 판단됨.

향후 유사한 계약업무 진행시 민원제기 등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해소하고 추진하거나 재공고를 통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교량별로 분리 발주하는 방법도 고려할 것을 권고함.

현재 서울시 관할 한강교량 27개중 CCTV를 통한 안전시스템 설치 대상이 21개이며, 이 가운데 16개 교량이 CCTV영상 감시·관제 출동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나 향후 설치될 교량에 대한 계약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시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엄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권고함.

14. 공사기간 합리적 예측을 통한 예산절감 필요

[소방합동청사 건립 / 소방재난본부]

가. 현황 및 문제점

종로구청과 종로소방서를 통합 개발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종로소방서를 재건축하여 소방재난본부, 종합방재센터, 종로소방서가 입주하는 통합청사 건립 사업임.

□ 사업내용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 기간 : 2019.01 ~ 2027.12
- 총사업비 : 419,259백만원
(소방 142,125백만원, 종로구청 277,134백만원)
- 소방예산 : 142,125백만원
(시설비 87,559백만원, 전산개발비 47,100백만원 등)

2024년 소방합동청사 건립 사업 예산 집행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소방합동청사 건립 사업	시설비	230,095	72,623	67,423	5,200

문화유산 발굴 유구 창고 보관 용역기간이 2024년 12월 ~ 2025년 11월임에 따라 예산 일부를 사고이월하였으나, 가장 큰 문제점은 예상되었던 계획 기간(180일)에 비해 실제 매장문화재 발굴 소요기간(1,008일)로 너무 길어진 점임. 조사물량 증가, 수송 제1-3지구 도시정비계획 변경, 매장문화재 훼손 최소화를 위한 공사기간의 연장, 겨울철 공사장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인해 수차례에 걸쳐서 지연되었음.

그 결과 현재 사업비 증액 추정치는 1,791억 원에 달함.

또한,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임시청사 임대료도 연간 1억원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될수록 지출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소방합동청사 매장문화재 발굴 기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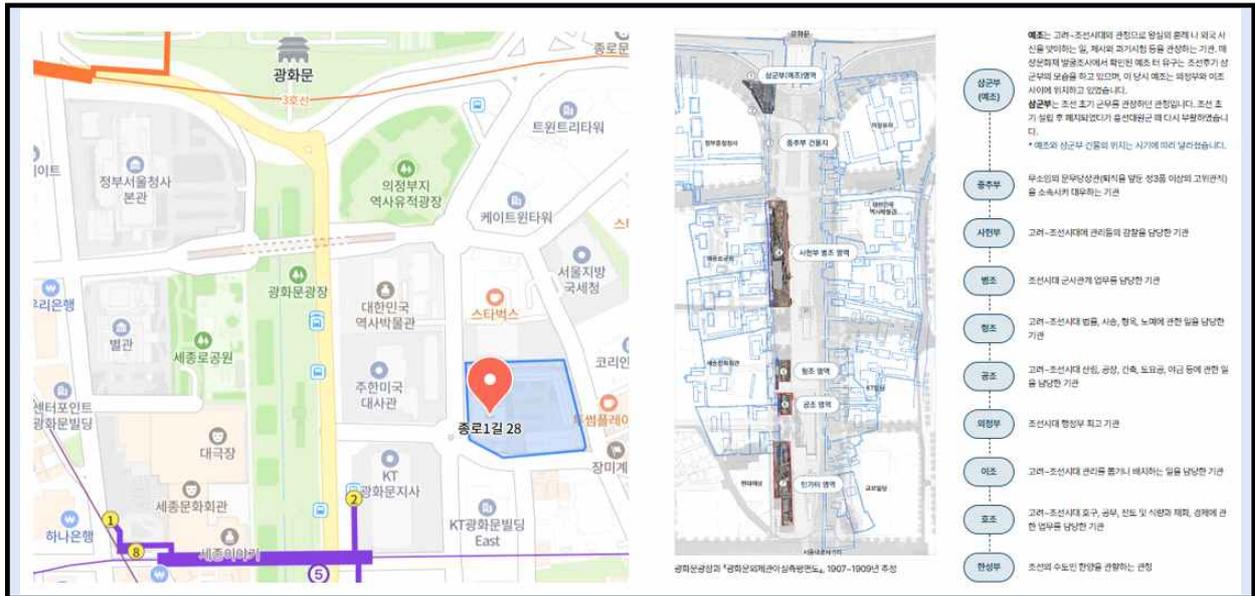
(단위: 일)

계획	용역계약	수송초 발굴	최종
180	270	917	1,008

사업 부지(종로구 종로1길 28)에 대해 2021년 9월부터 문화재 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선시대 사복시 터로 추정되는 매장문화재를 발굴했으며, 발굴유구에 대한 보존이 필요하다는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용적률 등 건축계획이 조정되고, 지하 1층 문화시설(유적전시관)의 면적을 확대하는 등 정비 계획 일부를 변경함.

서울시는 소방합동청사 건립부지 인근에 이미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을 추진한 바 있음.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재조성사업 추진 시 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매장문화재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2019년 1월 문화재청으로부터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고, 3월부터 11월까지 시굴조사를 하였고, 약 14,600m² 구간에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발굴조사를 수행한 바 있음. 광화문 광장의 시굴조사(허가 취득 시점)부터 정밀조사까지 소요된 기간이 2년 6개월인 점을 고려해볼 때, 최초 계획 180일은 사업 부지가 8,722.3m² 로 광화문 광장 재조성 사업에 비해 작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기간이 상당히 짧은 것으로 판단됨.

사업 부지와 광화문 광장 재조성 부지



나. 개선건의

건설공사에서 공사기간 산정은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이나, 공공 건설공사에서 무리한 계획 수립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설계변경 횟수도 증가하고 있음.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물가 변동으로 인해 공사비용이 급증할 뿐만 아니라, 준공 지연으로 인한 시민 불편 가중, 행정 차질 등은 큰 문제임.

사업대상지에서 중요한 유물이나 유적이 발견되면 문화유산 발굴조사 등으로 건설공사 사업은 지연될 가능성이 큼. 특히, 종로소방서 부지의 경우 인접한 광화문 공사의 사례를 검토하였을 때, 문화재 발굴 계획 수립 당시 180일로 공사기간을 추정한 것은 매우 낙관적으로 예측한 결과로 판단됨. 이에 계속적으로 임시청사의 임대료 지출 뿐만 아니라, 상당한 공사비 증액을 초래하였음.

소방합동청사 매장 문화재 발굴 기간의 경우 인접한 사례를 검토하였다면, 매장문화재 발굴 기간에 대해 기존보다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됨. 그러므로, 향후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소방재난본부와 종로구가 보다 면밀한 사업정보 검토와 사전협력을 통하여 철저한 계획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 건의함.

15. 소방공무원 정신건강(PTSD 등) 관리 사업의 세분화된 운영방안 모색

[소방공무원 정신건강(PTSD 등) 관리사업 / 소방재난본부]

가. 현황 및 문제점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업무 중 부상·질병에 직면한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회복·증진 확대지원을 위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PTSD 등) 관리』사업과 『소방공무원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사업을 추진함.

이 가운데 『소방공무원 정신건강(PTSD 등) 관리』사업을 위해 2024회계연도에 9억 1,782만원을 편성하여 7억 7,145만원을 집행하고 1억 4,636만원을 불용 처리한 바, 이는 내역사업으로 추진한 『119안심협력병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대부분 발생하였음.

해당 부서에서는 그 이유를 병원진료 후 실손의료보험 환급 및 119안심협력병원 의료비에 대한 이중청구 절차를 개선하고자 2024년부터 실손의료보험 환급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으로 절차를 변경함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제도개선 등 집행률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그리고 『소방공무원 정신건강(PTSD 등) 관리』사업예산은 사무관리비 통계목으로 집행되는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을 위한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세부사업의 내용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하다고 여겨짐.

소방공무원 정신건강(PTSD 등)관리 사업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통계목)	내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합계		917,820	771,457	146,362
사무관리비	소방공무원 PTSD 예방등	40,320	711,032	1,788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국고보조사업)	566,000		
	찾아가는 한방의료서비스 운영	95,000		
	심신안정실 물품 유지보수	11,500		
공공운영비	119안심협력병원 의료비지원	170,000	55,427	144,572
	소방공무원 심신건강의료비지원등	30,000		
자산 및 물품취득비	추나베드(6대) 구매	5,000	4,998	2

나. 개선건의

현재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내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은 사업규모도 크고, 국고보조사업이므로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여 집행할 것을 권고함. 별도 편성 시 국고보조사업 예산집행을 일원화하고 집행잔액과 보조금 정산잔액을 명확하게 표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